

질룩거리고 있다.

『괴한이 쇠파이프 등을 쳐들고 내리칠 때 머리만은 맞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팔로 머리를 감싼 기억이 날뿐 이내 정신을 잃었다』는 박신부는 테러를 당하던 날 『임군 등과 이야기하고 싶어 늦은 시간인데도 사제관까지 데려왔다. 만일 임군이 없었다면 피해정도는 훨씬 심했을지 모른다』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더듬었다.

박신부 등의 증언에 의하면 20대 가량의 괴한들의 머리는 짧게 깎은 스포츠형이고 얼굴에는 모래흙을 바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흑색 상의와 회색 바지 차림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 줄이 있는 축구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는 젖은 땅에 남아있는 발자국과 일치하고 있다.

박신부 등은 이들의 나이와 차림새 그리고 도주시에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일단 후퇴」라는 구령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인들이 군인이라는 심증이 이내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박신부는 군요원에 의한 테러라는 몇 가지 정황증거를 갖고 있다.

박신부는 광주항쟁 직후인 80년 5월 22일 천주교전주교구사제단의 결정에 따라 金鉉獎씨(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으로 구속수감)가 작성한 「전두환의 광주 살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을 5월 하순부터 주일미사때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진상을 알리는 한편 사태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공수부대원의 참회를 촉구했었다.

박신부는 특히 5월 25일 공수 7여단

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 금마공소 주일미사 강론을 통해 「공수부대원에게는 물건도 팔지 말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강조, 군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금마지역에 살고 있는 선자와 주민들은 박신부의 서슴지 않은 강론을 듣고 그의 신변을 매우 염려했다고 한다.

『당신이 거론되니 조심하라』

『당시 전주교구는 광주의 참상을 교구 신자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고 「전두환의 광주살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을 교구 산하 본당을 통해 신자들에게 배포할 것과 강론시 될 수 있으면 옥외 마이크를 설치해 광주 학살만행을 모든 도민에게 폭로할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는 「광주 살륙작전」 유인물을 1만매 마스터복사해 각 본당에 돌려 신자들에게 배포했으나 당국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측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산은 다른 본당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경계 지역인 여산은 소속은 전주교구나 행정구역으로는 충남에 속한 공소가 6개(신근리·고분·마전·봉동·두하·횡하)나 있어 당국의 대응조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전 공소의 교리교사였던 중학생이 길에서 유인물을 뿌리다 강경경찰서에 끌려갔고 신근리 공소의 이도마회장이 대전의 계

엄사에 불들려 간 일도 있었읍니다. 「신자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생각한 박신부가 계엄사를 찾아갔을 때 이 부대 군종신부는 「군기밀실에서 박신부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귀띔을 해주었다.

이와 비슷한 「충고」는 논산군 연무읍에 자리한 모부대의 군종신부에게서도 흘러나왔다. 군 상부에서 박신부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는 것이었다. 박신부는 「테러를 당하기 이전부터 위기 의식을 느껴왔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나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수녀연합회·가톨릭농민회(박신부는 75년부터 사건당시까지 「가농」전주교구 지도신부) 등 교구단체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했으나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의 방향을 「치정에 의한 원한관계」로 몰고갔다. 합동수사반은 여산본당 食服師(신부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의 가족·애인관계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전후로 여산성당 사제관 및 식당을 다녀간 여자들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사건발생 3일 후인 6월 28일 수사반은 식복사를 연행, 「박신부의 여자관계를 다 알고 있다. 바른대로 말하라」고 새벽 3시까지 취조했다.

사건의 수사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전주교구는 계엄당국하에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뿐이라고 판단, 박신부와 상의없이 「수사중지 의뢰서」를 7월 18일 수사반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이후 사건수사는 흐지부지돼 경찰은 사

건발생 6개월만에 「미제사건」으로 처리, 수사를 일단락시켰다.

사건의 「은폐·조작」

박신부 자신도 자신의 「수난」을 덮어두었다. 광주에서 죽은 영혼에 비해 자신의 피해는 작은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마당」 피습사건과 「吳부장 테러사건」을 보고 「진짜 화가 났다』고 했다.

박신부는 전주교구와 상의, 8년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양경배신부)은 관계기관에 제출한 재수사요구서를 통해 「지난 1980년 6월 25일 밤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여산천주교회 사제관에서 당시 주임신부였던 박창신신부에게 공수부대원임이 확실시되는 사복군인 5명에 의해 자행된 잔인한 테러사건이 당국의 고의에 의해 은폐되어왔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배후자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신부는 「진상규명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해묵은 사건을 들키자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은폐되었던 사건인만큼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테러를 재발하려는 망령들을 잠재우고 사회정의와 민주화로 가는 또 하나의 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신부는 이 테러사건이 군·

경고위관계자에 의해 축소·은폐되었다는 점을 중시, 이 부분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부는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로 사건 당일 범인들로 추정되는 청년들을 7공수여단이 있는 익산군 금마면에서 12km쯤 떨어진 여산 천주교회까지 태워주었다는 택시기사 申동식씨(40)의 증언을 들었다.

신씨는 사건발생 후 이리경찰서에 소환돼 경찰과 군수사기관에서 목격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리경찰서 정보과장 白모씨(퇴직)로부터 「일이 잘 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전주 보안대 수사관으로부터는 「밖으로 나가 입을 열면 범인들에게 보복당할지 모르니 입조심하라」는 「충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신씨는 모여관과 전북도경·전주보안대·이리경찰서 등으로 차례로 전네지면서 사실상 유치상태에서 8일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신부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당시의 전북도경국장과 이리경찰서장(사망) 이금경찰서 정보과장, 전주보안대장, 공수여단장 등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해 6월 24일로 만료, 형사소추는 불가능하나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이리경찰서에서 재수사에 나섰으나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자 10월 12일 전북도경에 도경수사과장을 반장, 이리경찰서장을 부반장으로 하고 수사과형사 8명을 반

원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구성,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朴炳圭목사 서울제일교회 탄압

서울제일교회(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신도들이 중부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4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84년 12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낮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경찰서 앞에서 路上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신도들의 모습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 경찰서 앞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진기」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오장동 제일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제일교회 신도들이 「보통」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또 누구인가.

중소상공업소가 빼곡이 들어차 있는 서울 중구 오장동에 자리한 서울제일교회는 반체제 「인권목사」 朴炳圭씨(65)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지난 72년 박목사가 부임한 이후 청계천 및 중부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야학 「형제의 집」(76년) 운영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선교정책을 펼치고 유신치하에서 투옥된 학생들의 발길이 찾아 당국의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집권세력과 진보적 교회와의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더라도 신도들이 왜 둘로 갈라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에 대해 각각의

주장은 다르다. 중부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박목사측 신도들은 「권력의 사주를 받은 정치깡패들의 폭력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는 反박목사측 신도들은 「박목사의 목회 노선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목회자로 모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엔 「서울제일교회사건」은 교회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내분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 목사와 보수적 신도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태의 발단은 1983년 8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형규목사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J장로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어금니 한 대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있었다. 제일교회신도들은 이 일이 교회내 목사와 장로 사이의 단순한 감정적 불화가 아니라 박목사에 대한 권력당국의 계획적 파괴 음모가 표면화된 신호탄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일교회 부목사 정광서목사(32)는 「이 무렵부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요원들이 교인들을 몰래 접촉해 교회를 웃길 것을 종용해왔다. 공무원의 경우엔 본인이나 상급자를 만나 위협했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세무사찰 등을 무기로 사용해, 이 가운데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겼고 회유당한 사람도 늘어났다」고 말한다.

이 무렵쯤 교회내 보수 성향 신도들의 박목사에 대한 불만은 노골화되

었다. 이들은 「형제의 집」과 대학생부 활동에 제동을 걸고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따지기도 했다. 반대파의 불만은 △ 박목사가 영적 구원문제보다 사회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표시하고 △ 초창기 개척교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 자유·인권을 부르짖지만 교회 안에서 행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월남한 이북출신들이 많아 투철한 반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박목사파 신도들은 이와 같은 反박목사파의 노골화된 불만이 이 무렵부터 두드러진 것을 우연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사실 70년대 「형제의 집」을 운영할 때 신도들 가운데는 반발하는 측도 있었지만 박목사는 이들 보수세력의 의견도 받아들여 큰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배방해와 怪청년들 출현

83년 10월 2일부터 매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J장로와 C장로 가족을 중심으로 20여명의 교인이 예배순서를 무시한 채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의 1절만을 반복해서 불렀다. 책상과 강대상 칠판 등을 두들기며 되풀이했기 때문에 예배를 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교회는 교인이 원하는 목사를 모셔야 하는데, 박목사의 목회노선을 불신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보다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면서 찬양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단상에서는 박목사가 설교하고 단하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회한한 현상이 벌어졌다. 예배방해는 갈수록 심해졌다. 주일학교용 칠판을 옮겨와 가죽 장갑속에 딱딱이를 끼우고 칠판을 두드리는가 하면 심지어 솔뚜껑까지 가져와 현금대를 두들겨댔다. 얼마 뒤에는 설교단의 스피커선을 끊어버리고 초대형스피커(가로 75cm 세로 1백cm)를 갖고 와 틀어댔다.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역시 박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어 찬양예배를 보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은 박목사에게 있으며 박목사만 물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교인들의 중재를 거부했다.

예배방해는 다음해에도 계속 이어졌다. 84년 3월 18일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언제부턴가 교인들도 아닌 낯선 사람들아 예배 때마다 10여명씩 나타났다. 그 중에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무리를 지어 왔다갔다 하며 분위기를 잡아갔다.

84년 3월 18일 박형규목사는 관할 중부경찰서 충무로5가 파출소에 「집회보호」를 요청했다. 출동경찰은 교회밖에서 세성거리다가 돌아갔다. 교회측은 다시 중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보호」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회내의 문제는 교회의 법에 따라 원만하게 자체에서 수습 처리되기를 바라며, 교회 내에서 야기되

는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 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9월 7일 밤 9시 20분경 낯선 청년들이 교회사무실에 들어와 정광서 교육전도사(당시)와 백덕운 교회사찰에게 「내일부터 교회사무실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집단 폭행했다. 소식을 들은 박준옥 전도사가 112신고를 했으나 괴한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근 일대를 뒤지다가 괴한 가운데 2명이 「수산」 다방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백차에 실려갔다.

여기서 이들을 쫓아 중부경찰서로 간 박전도사는 우연히 제일교회사건에 권력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백차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려간 이후 이들이 관할인 중부경찰서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함께 중부서로 갔지요. 그곳에서 폭력배의 우두머리로 지휘를 하던 사람이 일당들을 거느리고 경찰서 앞에서 세도를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사람 뒤를 밟았지요. 경찰서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거는 그 사람 뒤에 줄을 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사인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더군요. 「신×× 바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 나 조동화야. 지금 우리 애국청년들이 제일교회 용공 청년에게 당했다. 지금 중부서에 있으니 빼내!」라고 해요. 그러

더니 중부서 문앞으로 가 전경에게 「나는 서빙고 보안사요원 조동화다. 안에 보고해서 들어가게 해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그 전경 이름은 배××로 기억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도 제일교회전도사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둘 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읍니다.」

이어 이를 후인 9월 9일에는 박형규 목사가 60여시간 동안 당회장실에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박목사파와 趙東華씨(51) 등은 박목사에게 사표 쓰기를 강요하면서 박목사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을 강타했다. 감금된 박목사는 9월 12일 밤 1시 30분경 경찰의 진입으로 풀려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가 발표한 「보안사요원과 폭력배들에 의한 서울제일교회 불법 강제점거 사건 경위보고서」가 허위 사실을 위포했다는 혐의로 김철기총무·박세현 집사를 입건, 각각 구류 25일·15일에 처했다. 허위 사실은 「폭력배」의 리더 조동화씨가 경찰 조사 결과 보안사 요원이 아니라 동양화가였다는 것이다.

제일교회 신도들은 이 대목에 대해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 조씨는 낯선 청년들이 무더기로 제일교회에 모습을 나타날 때 이들의 리더로 행동했고, 이때 박목사 반대편의 신도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주보에 곧 집사로 기록되었으며 그 후 계속 예배

를 방해해왔는데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사 요원을 「사칭」했음이 교회전도사에게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보안사요원 아니다』

기자는 조동화씨가 살고 있다는 강서구 화곡동 양서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단지의 입구 경비원은 그의 이름을 말하자 이내 「동양화가 말이군요」하면서 동과 호수를 일러주었다. 때마침 그는 집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썼다는 극을 보여주었다. 2백자원고지 30장 분량의 글 제목은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가 우익폭력배라고 하는 조동화집사를 찾아서」였다. 앞머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에 찾았던 기자는 아파트 앞에 서울 1라 8244 레코드 승용차가 1년간 세금을 못내 세워져있는 것이 조동화집사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방문했다. 녹차를 끓이는 동안 전화기 옆에 놓인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은행에서 대출금반환 법적 수속을 하겠다는 통지와 아파트 관리비가 밀린 50만원 청구서가 가난한 화가의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부인 정여사는 우신교회 학생교육 집사로 교회일을 밤낮봉사하며 큰 아들은 신학대학 3학년생으로 북가좌교회 교육전도사로 다니고



있다고 말한다. 벽에 걸린 각종 상장 상패 감사패는 그의 말없이 묵묵히 걸어온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기자의 방문을 미리 예감하고 친절하게도 기자의 입장에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부 앞잡이로 매도되고 있다며 어린 시절 6·25를 겪으면서 몸에 밴 「빨갱이」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한편 오랫동안 인테리어계통 일을 했다고 했다. 하얏트 앰배서더호텔 등에도 자신이 관여했으며 박형규목사 이전 제일교회 당회장이었던 이기병목사가 교회를 건축했을 당시 자신이 직접 건축회사에 관여해 견적을 낸 일도 있다고 했다.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겸손했다. 박목사를 칭할 때는 「목사님」 또는 「박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처음에 신도들은 모두 다 박목사님

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결별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나와 교회3층에 「형제의 집」을 만들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선교 교육관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밤에 인쇄기 소리가 들리는 것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민주화운동인지 모르겠으나……목사님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산화된다고 한다면……」

—보안사 서빙고요원이라면서요?
「(웃음) 군대도 안갔습니다. 제가 94kg입니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안사 요원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보안사에 저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빙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있습니다.」

—보안사 「비파요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안사에도 비파요원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한명도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시다. 비파 요원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9월7일 밤 11시 보안사 신○○씨 전화를 전 사실이 있지요?

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빙고 아파트에 사는 제 친구, 김○○씨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신○○씨는 알고 있지요?

「잘 압니다. 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나 평민당에는 친구가 없겠습니까?」

—어느 학교 동창입니까?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라고 해야죠.」

—서진 품살통사건의 洪成圭를 데리고 있었다는데……

「처음 갔을 때…… 9·9절 싸움이 있을 때 구두닦이와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와 싸워줬어요. 그때 홍성규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그때 왜洪이 도와줬어요?

「당시 유도하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대학 축구선수도 왔었고…… 위낙 약세였거든요.」

—그들이 왜 왔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약세라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어디에서도요?

「교회지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때인데요.

「교회 하나라도 지켜보자는 것이었지요. 내 고향에서도 동네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왔고……. 화가들도 왔습니다.」

—왜 이런 짜움을 하고 있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재산 짜움입니다.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3등 분하자 2등분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저희는 3대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부 앞잡이로 몰아 극우의 속죄양이 되라고 한다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조동화씨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길어졌지만 주요 대목을 그대로 옮긴 것은 그가 제일교회 사태의 성격의 단초를 제공하는 주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朴목사, 백주의 터러 피습

다시 제일교회사태로 돌아가자. 사흘간에 걸친 박목사 감금사건이 있은 지 열흘 뒤인 84년 9월 교회안에서 박목사가 목포출신의 청년 박평수씨 등에게 폭행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마침 그날은 박목사의 생일이기도 했다. 반대파교인과 괴청년들의 예배방해를 피해 교회 옥상에서 예배를 마친 박목사가 신도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올 때 괴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배를 강타하고 구둣발로 걸어차고 짓밟았다. 쓰러진 박목사를 젊은

신도가 등에 들추어 업고 계단을 내려 올 때 1층 계단 한쪽에 몰려 있던 또 한편의 무리가 달려들어 다시 폭행을 했다. 큰 길가에는 행인들이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중부서 소속 형사들도 눈에 띄었다. 그야말로 백주의 테러였다.

괴청년들 가운데 한 명은 박세현집 사를 택시에 얹지로 태워 중부경찰서로 끌고 가 「여기 골수 용공분자를 잡아왔으니 조사하라」고 했다. 누가 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신도들은 중부서 앞에 마침 서 성거리고 있는 괴청년 가운데 박목사를 폭행한 청년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가 앞서 말한 박평수씨였다. 당시 나이는 20세. 그는 82년 9월 광주 지법에서 폭력행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박목사는 테러를 당한 뒤 성모병원에 입원 미 NBC, 일본 교도통신 등 4개 외신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일 교회사전은 보안사령부가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라는 성명서를 발표, 사건의 내막을 폭로했다.

『나는 지금 생명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 성명서에서 박목사는 「교회의 내분을 조장하여 그 분규 속에서 내가 살해된 것 같이 꾸미려는 그들의 공작은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전제, 살해되기 전에 내가 아는 사실을 밝혀두겠다고 했다.

박목사가 폭로한 「공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조직폭력배를 투입하여 나를 상해하는 동시에 교회를 파괴하자는 공작은 1981년경부터 국군보안사령부가 비밀리에 수행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1984년 6월경에 청와대의 고위층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고 얼마 전까지 보안사령관직에 있었던 한 장성이 본 교단의 원로 중경총회장에게 이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사문관으로 있는 나의 사촌동생이 이 공작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감찰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직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확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박목사는 정치공작의 근거로 △ 84년 당시 치안본부장 朴培根씨가 「제일교회사전은 경찰의 권한 밖에 있다」고 증언한 점 △ 당시 안기부장 盧信永씨가 「안기부도 힘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교회내분」인가 「정치공작」인가

제일교회사전에서도 등장한 「조직폭력배」 가운데 한 명인 洪成圭도 의문투성이의 인물이다. 「서진 룸살롱 사건」의 張津碩파의 별동대장으로 밝혀진 홍성규는 당시 서진 룸살롱 사건 당시에도 경찰이 매스컴의 추적에서 따돌린 의문의 인물이다.

한편 1986년 8월 민주화추진협의회는 제일교회사태와 서진룸살롱사건의

연계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탄압 및 조직폭력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芮春浩)를 구성해 박목사 및 반대파의 입장, 조직폭력배의 부모 등을 만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1980년 이후 소위 개척교인이라는 교회내부 세력에 의해 갈등이 생겨 초기에는 내분의 인상이 짙었으나 이에 편승하여 자칭 보안사 요원인 조동화라는 인물이 제일교회에 등장하면서부터 권력이 배경이 된 폭력배들이 개입하여 목회자 및 교인을 괴롭힌 것」이라 전제, 「서울제일교회의 예배방해 및 외부조직 폭력개입 사건을 박형규 목사의 반정부·반독재투쟁에 대한 경고 및 전력분산 그리고 반정부 반독재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의 일환인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일교회사태는 과연 「교회내분」인가, 「정치공작」인가. 한국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吳世攻총무(35)는 제일교회사태를 한국판 「반제르 플랜」으로 규정한다. 1975년초 불리비아 우익 군사독재자 「우고 반제르」의 이름을 따 명명한 이 계획은 군정하의 불리비아 내무성이 입안한 것으로 불리비아의 교회가 광부집단학살사건을 규탄하고 나서자 세워진 공작이다.

이제 서울제일교회사태는 「권력의 교회파괴공작」이라는 제5공화국 비리조사의 대상으로 정치문제화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교회파괴공작」을 누가 입안했는가. 그리고 그 지시자는 누구인가.

콩나이트 수분고 출판 1981년 12월
코스모 1981년 12월 12일자 12면
P교부

(3063)
나대로 선생 이홍우



명예선언 장교 테러

1989년 3월 16일 서울 도봉구 미아4동 138-70 노상에서 군명예선언 장교인 김종대 씨가 정체불명의 30대 남자로부터 뒷통수를 구타당하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 김씨의 명예선언 기념 페넌트 작성과 관련하여 군부대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수 차례 기도하였으나 이를 강행하던 중 이 사건을 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부대와 관련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 이 높으나 경찰은 군부대 관련 인물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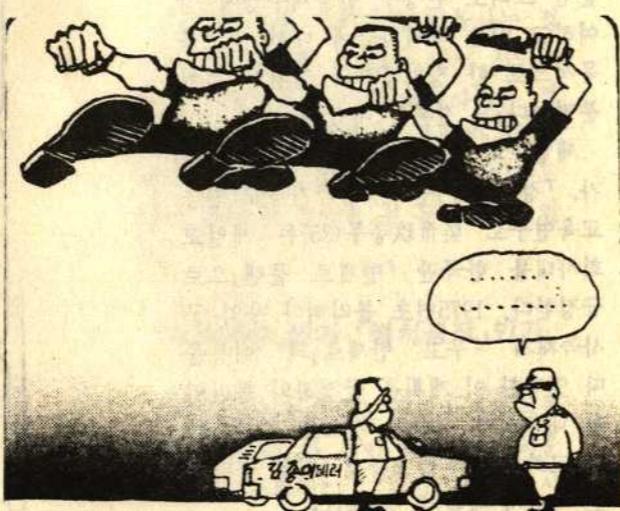
김종대씨 테러 진상 밝혀야

파고다공원서 명예선언 장교 환영대회

경희대 민주동우회·민가협 등 9개 단체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3가 파고다공원에서 이동균 (30·전 육군 대위·명예선언 장교) 씨와 문익환 계훈제씨 등 재야인사, 시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민주화 촉구 및 명예선언 장교 환영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군의 힘을 악용해 정권을 빼앗고 국민의 군대를 독재의 도구로 전락시킨 소수 정치군인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군 내에서의 편향적 정신교육 중단 △미국의 군사작전 지휘권 반환 △김종대 씨의 테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 연설하기로 한 김종대(26·전 육군중위)씨는 지난 16일 피습사건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군사문화사수 특공작전 중입니다."

정권안전기획부—안기부

신고하여 혼란막고 안정속에 국가발전

가장시급 대공상다

012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자료1 안기부의 연혁 및 역할

가. 중앙정보부

(1) 설치경위

(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일파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바꾸고 포고령과 계엄령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해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면 '최고회의'는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통합하여 행사하되, 국회의 권한은 최고회의가 행사하고 최고회의 산하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회의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이었다.

(나)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되었는데(제 1조),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중앙정보부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제 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중앙정보부에는 정보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협의기관을 두고(제 5조) 정보부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제 7조)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반면에 정보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제 6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최고회의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조직되었다.

(다) 당시 군부가 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비상조치법'을 제정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법부터 제정한 것은 쿠데타세력의 취약한 권력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고 군과 민간에 걸쳐 전국적인 정보망을 갖춘 독립적인 정보수사기관이 필요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기된다.

우선 군부 내부에 있어서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을 포함한 모든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국적인 정보망을 조직하기 위하여 지부를 두게 하였다(제 2조). 또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졌는데, 그 수사권의 범위를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라고 하였으나 정보부의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업무범위는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 정보부장에게 모든 국가기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정보부 안에 '정보위원회'를 비롯한 협의기관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정보부의 산하에 두게 하였고,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2) 중앙정보부의 개편, 강화

(가) 박정희의 집권기간중 중앙정보부법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그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게 된다. 그 중 처음의 것은 1962년 4월 16일 법률 제1051호 인데 중앙정보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차장, 기획통제관, 차장보를 두기로 하는 동시에(제 3조 제 2 항), 원래 부장과 차장의 임명에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을 고쳐 부장의 임명에만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게 하고 나머지는 부장의 재임으로 최고회의 의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의 권한강화를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의 제정 : 1963년 5월 31일 최고회의는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제정하였다(법률 제1355호). 이는 정권안보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정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더욱 강한 규율과 정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또 일정한 범위에서 우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장, 차장, 차장보, 비서관 및 비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정보부 직원, 즉 본부 및 지부에 근무하는 수사관 및 기능적 직원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 2조).

정보부 직원은 1급 내지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되는데(제 4조), 직원의 임용은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전한 자” 중에서(제8조 제1항) 이에 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단순히 결격사유만을 열거하고 있다) 3급 이상은 대통령 이, 1. 이하 3. 부정이 임명한다(제7조). 보수국: 기령으로 정해미(제13조) 성실의 의무(제15조), 복종의 의무(제17조), 비밀의 업무(제18조) 등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며(제25조 이하) 수사기관이 정보부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한, 미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현행법인 경우에는 구속한 즉시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32조 제2항)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자체없이 부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32조 제3항). 또 정보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보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였다(제36조 이하).

(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제정: 1963년 5월 31일 최고회의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49호)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하게 하고(제2조), "이 법 시행 이전에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상 긴급불가피하게 사용한 경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게 함으로써(부칙 제2항) 중앙정보부가 당시까지 사용했거나 그 후에 사용할 예비비는 세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또 경제기획원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금액의 액수와 사용용도를 추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중앙정보부는 군사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각 항목별로 금액과 용도를 명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 결산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본예산보다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는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무렵 중앙정보부가 1963년 1월 1일 창당된 민주공화당의 사전 조직작업 등 각종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거액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역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군사정권은 1962년 12월 22일 개정'헌법'을 확정하여 같은 달 26일 공포한 후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회의원선거를 거쳤으며 국회개원일로 예정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국회, 법원, 정부의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었다. 이에 최고회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서 같은 해 11월 26일 국회법을 제정하고 12월 13일에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정부조직법과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였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보부를 대통령직속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행정 각 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게 하였고, 정보부의 직무를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서사 및 시설과 시이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벌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하였다.

이 법은 중앙정보부의 조직 및 직원의 정원을 정보부장이 정하게 하고(제3~4조) 그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며(제5조), 정보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하게 하여 정보부의 예산을 정부가 감액하기 어렵게 하고(제10조 제1항), 예산은 총액으로 요구되어 그 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하였고, 또 다른 기관의 예산에 이를 계상할 수 있게 하였다(제10조). 나아가 정보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답변 또는 국회의 질문에 거부를 할 수 있게 한 반면(제11조)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보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정보부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부장이 감찰을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제12조) 정보부의 조직, 구성,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이외의 어느 누구도 통제하거나 알 수 없게 하여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비밀정치조직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기존의 정보위원회 및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외에도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겸직직원에 대한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감독권을 배제하고 전보발령권을 제한함으로써(제9조) 정보부로 하여금 명실공히 정부의 모든 기관에 군림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였다. 또 정보부 직원들의 직무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고(제15조)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16조).

(마) 1972년 10월 17일 소위 '10월유신'으로 쿠데타를 단행한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게 하였다. 이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유신헌법'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자 비상국무회의는 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1972년 12월 26일 법률 제2387호로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이었다. 이 법은 광범위한 내용의 각종 정보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상의 기밀"로 규정

한 다음 대통령 외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게 하고, '기밀'에 대한 탐지, 수집, 누설, 신고·제출의 불이행, 예비음모 등의 행위를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輿論의 자유를 탄압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논리적 결과로서 비상국무회의는 1973년 3월 10일 법률 제2590호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범죄에 대해 정보부가 수사권을 가지게 하였다.

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

(1) 배경

10·26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이 무너진 후 12·12와 5·17쿠데타를 통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대중을 유혈진압한 전두환일파의 정치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같은 해 8월 16일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같은 달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플'된 전두환은 10월 22일의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헌법은 같은 달 27일 공포되었다. 소위 '제 5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은 국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회의 집회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동시에 입법회의에서 "재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 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부칙 제 6조).

이에 따라 10월 28일 전두환이 임명한 81명으로 구성된 입법회의는 1980년 2월 31일 법률 제3313호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률 제3314호로 중앙정보부직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으로 개칭하였으며 1981년 4월 8일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법률 제342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두게 하고 안기부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하였다 (제14조).

군사정권의 이러한 안기부설치와 법개정은 10월 26일 이후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포고령에 의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여 당시의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모든 수사, 정보기관을 지휘하게 되고, 1980년 4월 14일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한 전두환이 정보부의 "월권적 업무수행과 근무자세"를 시정하고 "국가 안위의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조직체로서 회귀" 하겠다고 선전하면서 정보

부의 기구와 인원을 개편한 것과 케를 같이 한다. 즉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일파는 한편으로는 보안사에 모든 정보수사기능을 집중시키고 심생관개에 있던 중앙정보부를 긴제한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장악 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효율화시키는 데 정보부를 이용한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정보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정치공작과 고문 등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정보부를 마치 민주화하는 듯이 가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 안기부법의 내용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정보부법 개정법률' (법률 제3313호)은 법률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바꾸고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외에는 중앙정보부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습하였으며, 다만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권력남용을 막아 '국내외 대공정보수집활동과 정책자료수집에 역점을 두도록 조직과 운영면에서 정비를 단행'하겠다고 허위선전한 점, 그리고 보안사령부를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 그들의 속성상 과거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모든 군조직까지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즉 안기부의 직무범위 중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기획·조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정보위원회'를 '정보조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안기부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가지고 있던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으며, 국회, 국민, 언론 누구에게도 그 조직, 구성, 활동내용 및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거나 통제받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충성을 하 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3) 안기부직원법

1981년 12월 31일 입법회의는 법률 제3518호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안기부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에 앞서 법률 제3314호로 '중앙정보부직원법 개정법률'을 통과시켜 그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으로 변경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법의 수정된 내용을 중앙정보부직원법과 비교해보면 박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그 반민주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5·17군사정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안기부 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보너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 이 법은 중앙정보부직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안기부의 정권안보 기능강화를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안기부의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적으로 구분하되 (제4조),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제를 도입하여(제22조) 군대식 체제를 갖추게 하였으며 (군인사법 제8조 참조), 5급 이상의 직원은 대통령이, 그 이하는부장이 임명한다. 보수는 대통령으로 정하고(제12조), 안기부 직원중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하여(제13조) 안기부 직원에 대한 우대를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취임시에는 부장 앞에서 “본인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서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였는데(제15조) 안기부 직원의 이러한 선서는 일반공무원의 선서(“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또 과거 중앙정보부직원법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인정되었던 법령준수의무(제15조),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제19조), 청렴의 의무(제20조), 정치운동의 금지의무(제22조)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5·17군사정권이 안기부에 대하여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4) 전두환정권 초기에는 보안사령부와의 역학관계상 안기부는 보안사의 감독을 받으며 보안사의 정치공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단 민간 정부인 것과 같은 가식적 외형을 갖춘 전두환정권이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여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반대세력을 회유, 탄압,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기부의 효용성은 군대조직으로서의 경직성을 가진 보안사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1985년 2월 12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당의 출현, 그 이후의 5·17군사정권과 민주세력간의 분격적인 대치상태를 기치면서 안기부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어 권력의 핵심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전두환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군사정권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안기부의 기능과 권한은 두 측면, 즉 정권안보기능 수행의 측면과 정권내부 권력배분관계에서의 위치의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저항에 대처하여 정권을 안보하는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안기부는 과거의 중앙정보부에 비하여 더욱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안기부 외에도 치안본부 대공분실, 각 시·도경의 대공분실, 검찰 등 각종 수사기관의 공안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권리남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안기부의 기능이 과거 중앙정보부에 비해 떨어진 듯한 현상도 나타났으나 5·17군사정권에 대한 민주세력의 저항이 얼마나 강렬했던가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안기부의 기능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의 충분한 ‘역할수행’의 덕분으로 현재까지 군사정권이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정권내부에서의 권력배분관계에 있어서 안기부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누리고 있던 독점적인 위치에서 다소 약화되어 그 지위의 일부분을 보안사령부에 빼앗기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박정권이 박정희 개인으로 철저히 권한을 집중시킨 1인 장기집권체제였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하는 중앙정보부의 권력 또한 다른 기관 모두를 암도하는 것이었으나 5·17군사정권의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뭉친 소수의 정치군인집단이 집단적인 음모에 의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전두환 개인에 의한 절대적인 권력행사라기보다는 보안사령부로 대표되는 소수의 정치군인집단에 의하여 권력이 관리되는 독재체제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 결과 박정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으나 전두환은 처음부터 단임을 선언하고 그 동료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전두환에게 충성하는 안기부보다 쿠데타세력 전체의 권력기반이 보안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사정은 국민의 저항에 대항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기능이란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한 것이고 안기부는 보안사 및 그밖의 억압기구들과 함께 협조·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다. 안기부의 정치적 역할

(1) 정권안보기관으로서의 안기부

안기부의 현실적 기능을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군사독재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한 '정권안보 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는 다투이 없을 것이다.
박정희정권이 새벽에 군대를 끌고 한강을 건너와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5·17정권 또한 공수부대와 탱크를 앞세우고 박정희 사망 후의 과도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수립된 정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각계각층의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안기부(박정권의 경우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관이었다.

정권안보를 위한 국민감시 및 억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방대한 인적 물적 기구가 필요하고 비판세력에 대해 직접 물리적 탄압을 가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하였다. 또 정권을 지탱하는 관료조직 내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권안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정부기능을 일관성있게 조직하며, 관료조직 내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다양하게 구성된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사되게 되며 그 기관의 담당자에 따라서 권력행사방식은 상당한 편차를 내기 마련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업무에 간섭, 통제할 수 있는 형식적 실질적 기능이 부여되어야 하였다. 전자가 안기부의 업무기획·조정권이라면 후자는 집권자가 안기부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국가 행정공무원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권이 국민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정권을 안보한다는 것은 곧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안기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을 적대시하는 군사정권으로서는 안기부에 의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과 그외의 각종 불법행위를 보호해 주어야만 이들의 충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적인 권리남용은 정권의 소극적 비호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사, 방조, 비호를 받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공적 사적인 온갖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 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위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군사정권하에서 오로지 집권자 1인에게만 책임을 지고, 국가의 모든 성과기능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안기부가 곧 집권자를 대리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행정 각 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개입, 간섭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하고 조정관을 파견하여 판사들의 행동과 재판을 감시하였으며, 위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종 정치공작, 예컨대 정권에 충성하는 야당의 창당과 활동의 조종, 야당의 분열공작, 비판적인 야당의원의 연행 및 처벌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위의 국가(state beyond state)'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안기부의 기능은 그 조직, 구성, 활동내용 및 예산의 비밀과 정치적 법적 무책임을 수반한다. 우선 조직, 구성, 활동내용 및 예산이 비밀로 되어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그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기부가 국회, 언론,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또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도 대통령 외에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책임추궁만 없다면 결국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 즉 대통령 1인에게만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결국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의 보장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성과 공개성의 교묘한 결합에 의하여 효과적인 국민감시, 억압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 안기부는 확고한 실체로서 활동해 왔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었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안기부의 감시의 손길이 뻗쳐 있으며, '불온'한 인동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안기부에 연행되어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안기부의 방침대로 법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정신적 공포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기부의 조직, 소재지, 구성원, 활동내용 등이 전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예컨대 똑같이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경찰에 비하여 안기부가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 정도가 물리적으로 낮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찰의 조직, 소재지, 구성원, 활동내용, 예산 등이 공개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안기부는 그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안기부는 '밤과 안개'처럼 그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안기부가 그 동안 군사독재정권의 안보에는 탁월한 기능을 수행했으나 그 첫번

제 직무인 '국외정보의 수집·작성'에는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조갑제, 「국가안전 기획부」,『월간조선』1988년 3월호, 233쪽) 이는 두 가지 짐을 의미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안기부가 비록 명목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외정보'를 수집·작성하는 기관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은 정권안보기관으로서 조직·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가 독재정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것은 결코 우연하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다른 하나는 그 정당성의 기반을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미국의 지지에서 구해 온 군사정권에 있어서 국외정보의 수집·작성은 처음부터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에 의존하면 되었고 굳이 안기부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안기부가 처음부터 CIA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조직되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과도 관련되는 것인데(조갑제,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 커네션」,『월간조선』1985년 12월호 참조) 안기부의 역할조정 또는 폐지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야당이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기부를 '대외정보처'로 바꾸고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및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당히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안기부를 '국외정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법률에 의해 일부 권한을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달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안기부는 처음부터 국내적인 정권안보기관으로 설치, 조직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국외정보기능이 미약했던 것은 법률상 직무권한의 조정 문제보다는 정권의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된 현상이므로, 그 정권이 미국에 대한 예속성을 탈피하고 자주성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외정보기능의 강화는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안기부의 현실적 기능

(가) 관계기관대책회의 : 군사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안기부의 정치적 기능을 평가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관계기관대책회의'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안기부의 담당자와 함께 회합을 갖고 그 문제의 성격과 정부당국의 대처방안을 의논해 온 것을 말하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실상 관례적으로 존재해 왔다.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문제의 수준이나 정치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처하는 모임으로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는 안

기부장, 국무총리, 민정당 대표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례회동하는 것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안기부장 또는 차장, 대통령 특별보좌관, 보안사의 담당자, 관계부처의 장관, 경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이 회동하여 시국에 대한 대처방향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천군 고문살해사건과 같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처리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이 있다. 이 회의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관의 발의로 안기부장이 소집하며 주 2회 정도 안기부 별관이나 호텔 등지에서 회합을 가진다고 하는데, 비록 법령상 의결권이나 정책집행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그 회의에서의 협의는 사실상 정부당국의 정책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각각의 국가기구가 정권의 유지와 지배세력의 기득권옹호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굳이 필요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각 국가기관들이 그 실제적 기능과는 상관없이 명분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담당자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이 기관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여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국무총리, 내각 등이 국가공권력의 담당주체로 활동하게 되어 있고, 이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그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에 반하여 독재권력의 속성상 집권자에 충성하는 정보집단인 안기부가 비밀리에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통로로서 만들어진 것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와 활동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서, 최근까지는 그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기부는 이 회의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을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며, 또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철저히 부정하였다는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에서의 고위 정치적 집회에 국한되지 않고 각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활동해 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폭넓어져 특히 문제로 된 것은 '관계기관노동대책회의'이다. '관계기관노동대책회의'는 국무총리훈령 제163호에 의해 조직된 것인데 각 지역의 안기부 지부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보안사의 담당자, 노동부, 지방 노동행정기관, 경찰 및 검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기업가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의 노동운동 실태를 감시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며, 좌경·용

공조작을 하고 이용노조를 지원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노동자들의 구속을 결의하기도 하고, 구사대의 결성 및 폭력을 사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력의 직접 개입을 결정하기도 하고 있다. 최근 울산 현대그룹의 노동자테러사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관개기관노동대책회의'를 이용하여 안기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다.

(나) 인권유린과 정치공작 :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밀실에서의 잔혹한 고문'일 만큼 그 동안 안기부의 불법체포, 감금과 고문은 널리 행하여졌다.

안기부는 군사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을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하여 안기부의 본부 또는 각 지부로 연행하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감금한 다음,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폭행, 협박, 고문 등을 가하여 자신이 '용공'분자이며 '좌경'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나 '간첩'활동을 해 왔다는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고, 이 허위자백을 근거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등의 죄명을 걸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안기부에서 만든 의견서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를 하고 법원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미리 정해진 대로 유죄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 등 각종 실체법규를 법원이 무한정 확대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처벌한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안기부의 고문 등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법원이 고문에 의한 자백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해 온 점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 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고문, 폭행, 협박, 장기의 구속 등의 사정이 있었으면 일단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은 "진술의 임의성을轻易하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형사소송) 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하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대법원 1983년 3월 8일 선고 82 도 3248 판결)고 하여 임의성이 없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3년 6월 14일 선고 83 도 647 판결)"고 한다. 나아가서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이나 안기부에서의 수사과정에 고문 또는 구속의 장기화 등의 사정 때문에 임의성 없이 자백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자백을 검사 앞에서 한 번

더 되풀이한 경우에는 감사 앞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는 것이 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함으로써(대법원 1983년 11월 8일 선고 83 도 2436 판결) 결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불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들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안기부 따위의 수사기관은 어떤 폭행과 고문을 해서라도 일단 허위자백을 받아놓으면 그 자백에 의해 자동적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간의 인권유린이 정권안보를 위하여 안기부에 의해 선도적으로 수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히 법률의 해석, 적용을 담당하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주장해 온 법원의 법해석에 의하여 철저히 뒷받침되었다는 점이다.

안기부의 인권침해는 이러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폭로된 바에 따르면 안기부는 서울 분실에 있는 '기술보안단'이라는 건물에 최신형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진화 등의 도청을 해 오고 있으며 서울 국제우체국 안에 '101우정연구소'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검열우편물 수신대상자명부'를 작성해 놓고 우편물 검열을 해 오고 있다. 특히 도청이나 우편물 검열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한국일보』, 1988년 10월 19일자 참조) 이러한 행위는 안기부가 국외정보 또는 '대북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보다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정권안보를 위한 국민감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기부는 또 관개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정권에 불리한 각종 사건이나 정보를 은폐 조작하고, 야당의 분열·회유공작, 야당정치인의 감시와 협박, 여론조작을 비롯한 각종 정치공작을 수행하였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양에 대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분극동을 비롯한 범인들을 비호한 데에서 더 나아가 '성을 헤매는 도구화'한다는 폐륜적인 모략, 날조선전을 하고, 박종철군 고문설해사건의 진상을 은폐·축소조작한 것, 군사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소위 '4·13호헌선언'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알해재단'의 설립이나 전두환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바와 같이 안기부는 '국가 안전보장'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하면서 오로지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악압하는 데 전념해 왔다.

(다) 권력의 독점과 다른 기관에 대한 개입 : 안기부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근거로 모든 국가기관에 정보관(과거에는 '조정관')을 파견해 놓고 있는데 이들은 보안감사를 행하고, 정보보안업무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

지으로 그 기관의 행정업무에 까지 개입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이라는 단어가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서 안기부의 권한이 애매모호한 데에서도 기인하지만 독재정권이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데 안기부를 이용하였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안기부의 '합법적'인 권한으로는 정보비 등에 대한 예산통제권과 보안감사권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안기부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은 안기부의 정보관으로 하여금 그가 파견된 기관의 업무 가운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지적 및 필요한 정책의 개발까지 담당하게 하고 그 내용을 당해기관에 통보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안기부가 행정기관의 고유의 업무에 깊이 개입·간섭할 수 있게 하였다. 고급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안기부 정보관이 작성한 개인별 신상보고서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제반 '합법적' 또는 사실적 장치에 의하여 안기부는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 및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국가권력을 독점하면서 배후에서 국가의 정책이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반면,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라) 예산의 문제 : 안기부의 예산은 본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며, 본예산은 안기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과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안기부 예산으로 계상된 예산과 예비비의 규모는 그 내역은 알 수 없더라도 총액은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기부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9,859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체 예비비의 60%를 넘는 금액으로서 서류상의 청구부서는 안기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직접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출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조갑제, 「기능축소설 개기로 본 안기부의 실상」, 『주간조선』 1988년 5월 29일, 24쪽). 이와같이 그 내역과 금액이 철저히 비밀로 되어 대통령과 안기부에 의해 사용되는 금액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사용되었을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박종철군 고문살해 및 은폐·조작, 4·13호헌조치 등 군사정권의 영구화 획책, 6월 시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대통령선거 등으로 소용돌이쳤던 1987년의 경우 안기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본예산이 110억 원인데 안기부가 사용한 예비비가 1,649억 원에 이르렀음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의심은 더욱 확실해진다. 국방부의 국방예산조차 그 내역이 공개되는데 안기부의 예산이 공개되지 않고 또 예비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기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정권안보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국민의 세금을 부제한으로 사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명단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잔 사겠습니다.”

쉴 날 없는 안기부

0여명에게 납치당했다고 포털 노조원들이 주장했다. 9일 포털 노조 교육부 차장 이용대(25)씨 등 노조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한터울 사무실에 들렀다가 귀가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서울1 루5406 등 르망 2대와 쏘나타 승용차 1대에 탄 청년들에게 강제 납치됐다는 것이다.

차적조회 결과 서울1 루5406 르망 승용차는 안기부 건물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1 세기문화사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납치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회사쪽의 허락 없이 풍물패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해고돼 6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 . po. 10.10>

안기부원 민중당간부 연행하려다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붙잡혀

【포항=구대선 기자】 8일 오후 6시30분께 경북 포항시 중앙동 경동예식장 앞길에서 안기부 직원 3명이 민중당 포항지구당 노동부장 강성희(24·여)씨를 강제연행하려다 인신매매범으로 잘못 안시민 등 1백여명에게 불들려 경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날 예식장 앞에서 지구당행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40대 남자 3명에게 불잡혀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기부직원들의 신원과 강씨의 연행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비추적 국가안전기획부 정보비 명세서

안기부의 정보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와 9개 부처에 계상된 정보예산. 그리고 안기부 자체 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는 안기부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비자료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본다.

이재화(본지 기자)

안개 속의 안기부 예산

이해찬 의원 : 왜 경제기획원 예비비 가운데 안기부가 거의 사용하는 일반예비비 360억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가?

조순 부총리 : 안기부 예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기밀보호라는 성격상 보고 할 수 없다.

이해찬 의원 : 그러면 기획원은 안기부 예산을 어떻게 예비비에 계상하는가? 안기부에서 올리는 대로 계상하는가?

조순 부총리 : 안기부가 일괄 요청해 오면 기획원은 이를 배당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총액 밖에 알 수 없다.

이해찬 의원 : 예산내용의 타당성은 어떻게 가리는가?

조순 부총리 : 기획원으로서는 내역의 타당성을

알 수 없다.

이해찬 의원 : 그러면 안기부가 몇천억원이라도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조순 부총리 : 관례와 상식에 따라 이뤄지리라 본다.

이상은 작년 11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해찬 의원과 조순 부총리가 안기부 예산을 놓고 벌인 입씨름 중의 한 부분이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장관(부총리)조차 정부기관의 하나인 안기부의 예산내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순 부총리는 비공식석상에서 '그 문제는 안기부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아 안기부 관련 예산은 경제기획원의 손이 닿지 않는 '성역'임을 시사했다.

안기부 예산에 관해 모르기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도 마찬가지. 그간 안기부 관련 예산심의는 국회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실시되어 왔는데 말이 심의지 총액에 대한 보고만 듣고 간단히 처리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5공청산 및 민주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지난해 11월 말에 실시된 90년도 안기부 예산 심의과정도 이와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이처럼 안기부 관련 예산은 경제기획원은 물론 국회의 해당 국회의원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싸여져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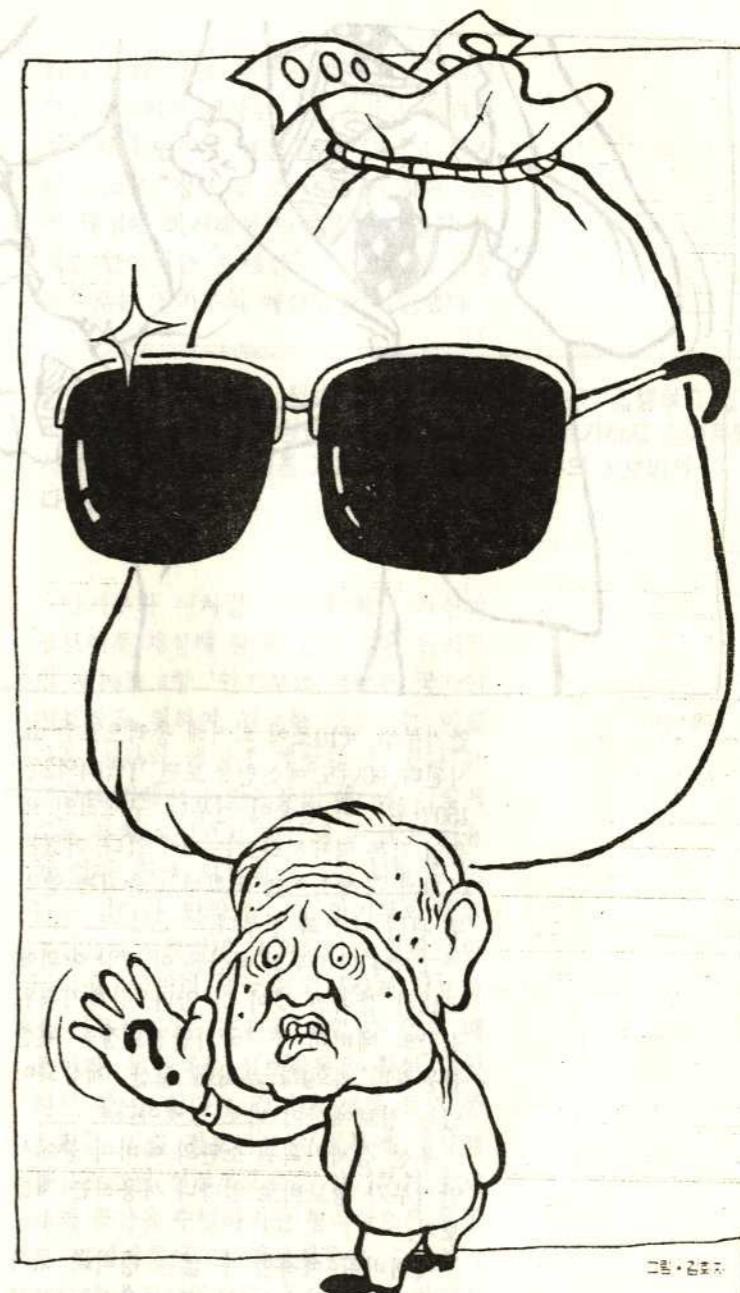
수포로 돌아간 예산심의

사실 90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장을 불러 정권안보에 사용되는 예산의 내역을 들어봐야 한다' '안기부가 쓰는 돈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 단단히 별렀지만 안기부 예산 심의는 단순한 간담회 형식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현행 안기부법에 국회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법에 의해 관련상임위원회 심의 때 세출예산의 총액만 보고하고 산출근거와 세출입 각목 명세가 제출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밀이라는 구실만 붙이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기부법 제10조) 그 집행결과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안기부법 제12조).

최근 몇년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그간 '국가위의 국가' 또는 '무소불위의 권부'로 알려진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내역, 즉 정보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안기부법과 예산특례법이 존속하는 한 그 내막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베일에 싸인 안기부의 정보비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 총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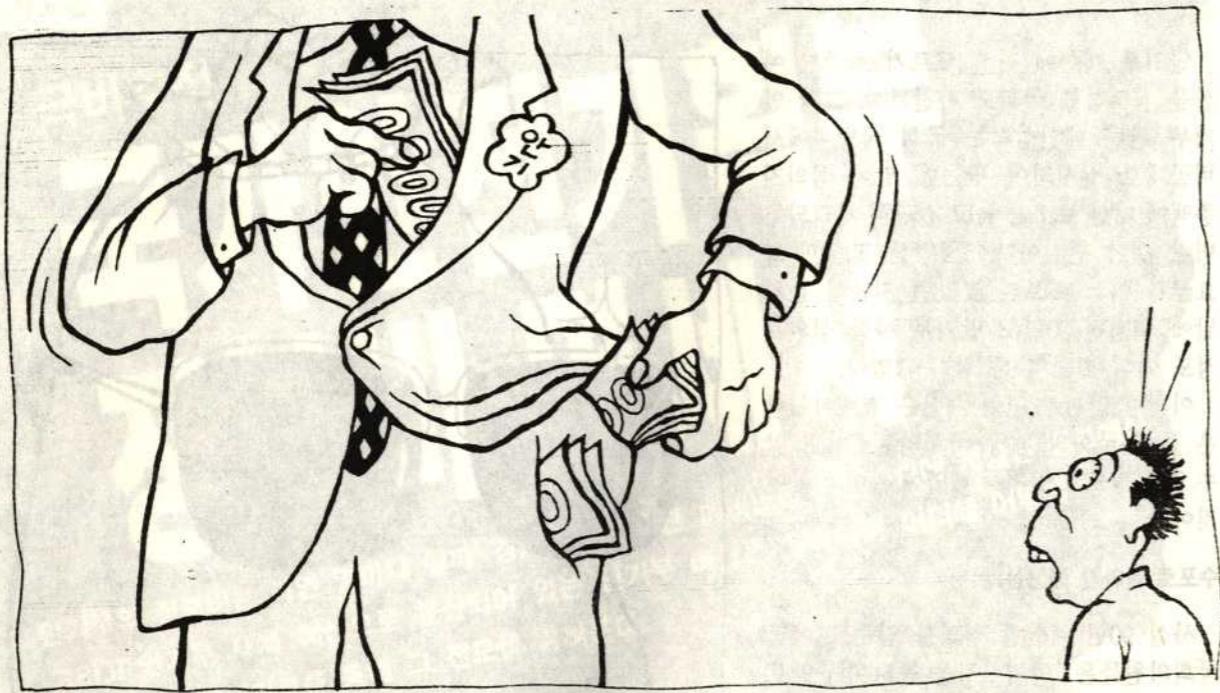


그림·김효진

제출되는 안기부 일반예산과 여기저기에 은폐되어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중 안기부가 사용하는 것을 추출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

안기부의 호주머니 돈, 예비비

안기부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일반예산 밖에 없다. 그것도



그림·김호자

안기부법 제10조에 의거해 총액으로만 표시된다. 90년도 예산안을 보면 '1백64억2천 150만원'. 이 한줄이 전부다. 구체적인 세출입 각목 명세서라고는 아예 없다. 어쨌든 이것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안기부 관련 예산의 전부다.

그러나 안기부의 예산은 이 예산 이외에 교묘히 감춰진 것이 더 있다. 경제기획원 소관의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와 9개 부처에 분산, 계상되어 있는 정보예산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경제기획원 소관의 예비비 중에서 안기부가 정보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고자 책정된 것인데 이 예산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해 총액으로 책정, 국회의 심의를 받고 결산 때 실제 사용액만 공개된다. 이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이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기부의 지시와 통제속에 사용되는 안기부의 정보비인 것이다. 이양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이 활동경비의 사용용도에 대해 "안기부가 그 내역은 밝히지 않고

수시로 요청하면 그때 그때 그 소요액수대로 예비비를 배정한다"며 이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

이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작년 국정감사 때 이철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종합대책 관계기관대책회의 비공개 자료」에 나타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안기부가 중심이 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을 정리한 이 자료에는 경제기획원의 협조사항으로 ▲ 89년 홍보 예비비(19억원 요구) 조속지원 ▲ 90년 홍보 예산 확보(26억원) ▲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보듯 안기부가 안기부에서 요구한 액수를 조속히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로 책정, 지원하라고 지시하면 경제기획원은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안기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예비비를 두고 '안기부의 호주머니돈'이라 부르기도 한다.

84년부터 88년까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보면 예비비 중 안기부가

사용하는 정보비의 규모를 알 수 있다.

84년부터 88년까지 실제 사용된 예비비의 추이는 <표1>과 같다.

<표1>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단위: 원

구분	년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예비비 중 실제사용액 (A)	1984년	1465억 7776만	1572억 6139만	1833억 1163만	2426억 7909만	2122억 3611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 경비 (B)	1984년	1178억 8792만	1157억 5785만	1296억 4584만	1648억 5035만	1746억 6762만
B/A (%)	80.4	73.6	70.7	67.9	82.3	

* A는 일반예비비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뺀 수치이다.

B/A 중 제5공화국 평균(84~87년)은 73.1%이다.

다름 없다. 조순 부총리는 국회답변에서 "다른 부처에 계상된 정보예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안기부 예산은 아니다"고 했지만 스스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의거해서 안기부의 조정과 통제를 받아서 쓰는 예산"이라고 말해 실질적으로는 안기부의 예산임을 시인했다.

9개 부처에 계상된 이 정보비는 형식상 해당 부처가 집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예산의 책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안기부의 사전승인과 통제, 감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안기부의 정보비와 다름없다.

안기부가 이처럼 다른 부처에 자신의 정보비를 계상해 둘 수 있는 것은 안기부법 제10조 4항 '안기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다. 안기부의 예산을 이렇게 다른 부처 예산으로 계상해 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외형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을 안기부의 일반 예산으로 책정하면 그 외형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과다하게 정보비로 사용한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보활동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무활동 지원 정보비'를 문공부에 계상해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안기부가 종교계의 공작을 수행하지만 형식상으로 문공부 관계자들이 그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종교탄압 또는 공작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정보예산은 안기부의 허가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해당 부처가 이 예산을 쓸 때는 안기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분기마다 예산집행에 따른 심사·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1981년 3월2일 공표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의해 안기부가 다른 부처를 조정·통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안기부장이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안기부장에게 외무부등 9개 부처에 대해 예산편성 권한과 정보사업 예산 및 보안업무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안기부 공포증' 마저 갖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에 계상된 정보예산은 노동부의 고유업무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되기 보다는 안기부의 민주노조·민주노동단체 탄압공작비로 쓰이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기부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무부

-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재외 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내무부

- 가. 국내 보안정보(의사·해양경찰 정보 포함)
의 수집: 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법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법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정보사법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 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법무부의 나 목 내지 마 목에 규정된 사항.
-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
- 라. 정보사법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5. 체신부

-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문화공보부

- 가. 신문·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영화 등의 대중전달매체의 활동동향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에 관한 사항.
-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라. 대공 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처

-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토통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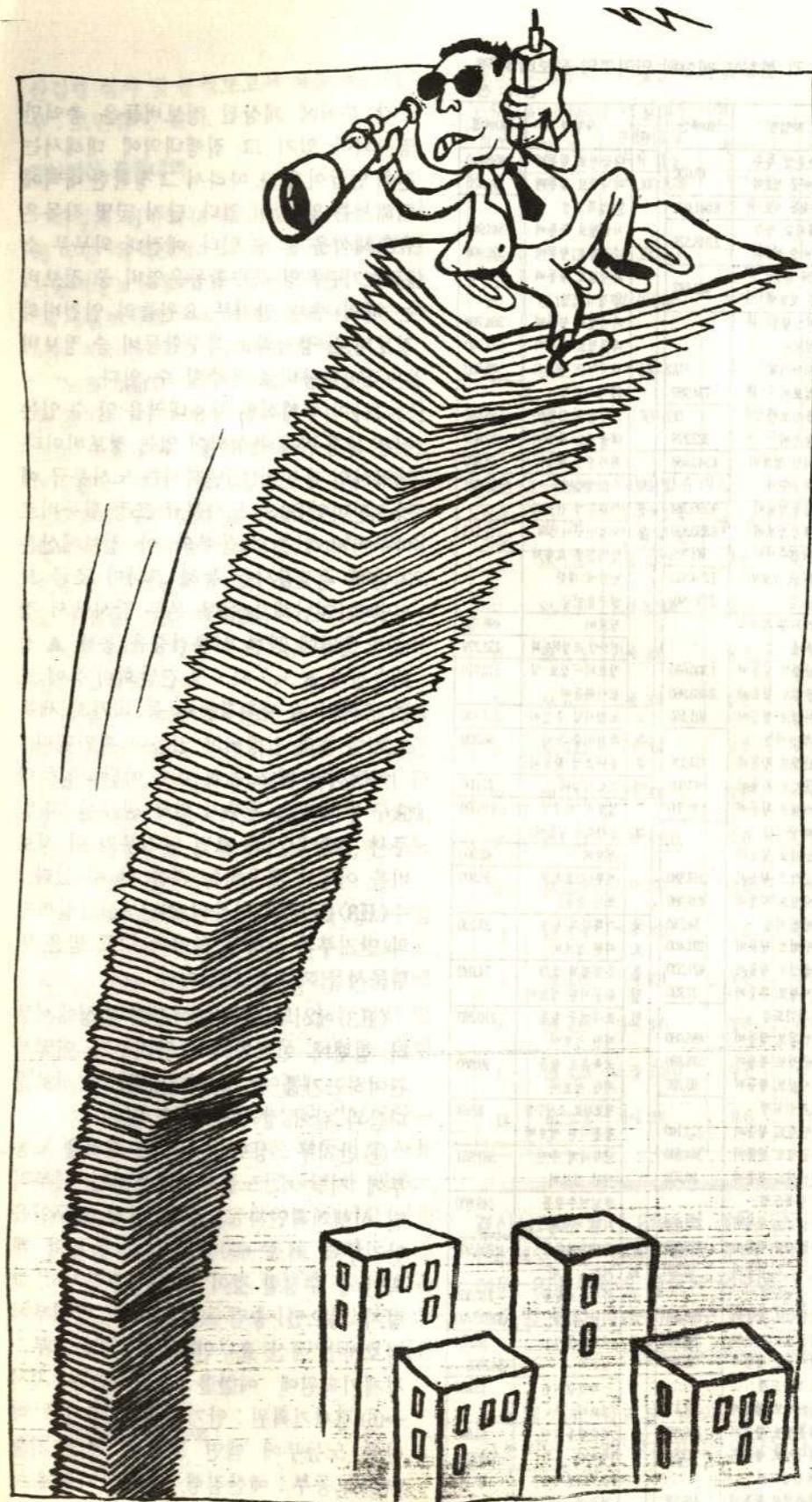
- 가. 국토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 다.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 정보 및 보안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안기부는 이 규정에 설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조정 대상기관인 9개 부처(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 중 노동부 포함)에 각각 정보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있다.

9개 부처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안기부의 정보비는 <표2>와 같다.

이렇게 집행되는 정보예산은 과연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가. 89년 4월 23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작성, 안기부에 보고한 「국가정보자료 수집 자체계획서」라는 문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표2〉 각 부처에 계상된 안기부의 정보비 내역

단원 : 천연

소 관	사업명	'90예산	소 관	사업명	'90예산
외 무 부	기관운영 특수	18,000	대공정보 활동비 외사정보 활동비 ① 경북도경 치안정보 활동비 ② 대공정보 활동비 ③ 치안 정보비 ④ 대공수사 활동정보비 대공정보비 사전수사비 ⑤ 외사 정보비	활동비증 정보비	856,740
	장관활동 정보비	8,041,032		외사정보 활동비	50,520
	장계외교 특수	2,018,576		① 경북도경 치안정보 활동비	348,960
	활동비증 정보비	402,582		대공정보 활동비	396,900
	대UN 특수	734,989		외사정보 활동비	59,040
	활동 정보비	323,279		② 경남도경 치안정보 활동비	368,760
	① 치안기획 정보비	4,543,486		대공정보 활동비	512,040
	② 통신보안 활동비	9,195,784		외사정보 활동비	76,560
	③ 치안 정보비	8,850,859		③ 제주도경 치안정보 활동비	53,640
	④ 대공수사 활동정보비	344,925		대공정보 활동비	152,880
	⑤ 외사 정보비	2,254,531		외사정보 활동비	64,680
	(\$190,990)			우정연금	1,715,901
내 무 부	2. 시도경 정보비		우정연금비증 기관운영 관공비 우정연구사업의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출연금 정보비 전선망 조정위원회 정보비 - 경보 및 보안활동비 노정사업 추진비 특관비증 노사 분규조정 활동비 정보사업비 정보비(외국인 등록조사 활동비) 정보비 정부 감호처분 조사 활동)	1. 치안활동 정보비	498,730
	① 서울시경	1,300,680		전선망 조정위원회	152,279
	치안정보 활동비	2,463,960		정보비 - 경보 및 보안활동비	512,010
	대공정보 활동비	401,160		노정사업 추진비	317,100
	외사정보 활동비			특관비증 노사 분규조정 활동비	96,320
	② 부산시경			정보사업비	21,000
	치안정보 활동비	414,120		정보비(외국인 등록조사 활동비)	309,000
	대공정보 활동비	897,000		정보비	42,000
	외사정보 활동비	139,080		정부 감호처분 조사 활동)	66,000
	③ 대구시경			기획관리 활동	23,100
제 신 부	치안정보 활동비			지원 정보비	
	대공정보 활동비	263,880		통일정책 조정 활동지원 정보비	74,992
	외사정보 활동비	499,980		조사연구 활동	110,263
	④ 인천시경	54,240		지원 정보비	
	치안정보 활동비	191,400		교육홍보 활동	99,860
	대공정보 활동비	421,320		지원 정보비	
	외사정보 활동비	37,920		정보자료 조사수집	8,864
	⑤ 경기도경			활동지원 정보비	
	치안정보 활동비	486,060		남북대학 추진	587,951
	대공정보 활동비	575,880		지원 정보비	
체 신 부	외사정보 활동비	65,280		통일연수활동	149,800
	⑥ 강원도경			지원 정보비	
	치안정보 활동비	313,140		국내홍보 활동	366,502
	대공정보 활동비	344,940		지원 정보비	
	외사정보 활동비	20,520		해외홍보 활동	210,365
	⑦ 충북도경			지원 정보비	(\$197,584)
	치안정보 활동비	274,800		매체활동지원	56,866
	대공정보 활동비	226,200		정보비	(\$4,280)
	외사정보 활동비	16,320		문화활동지원	13,600
	⑧ 충남도경			정보비	
체 신 부	치안정보 활동비	296,040		예술활동지원	51,595
	대공정보 활동비	394,440		정보비	(\$34,424)
	외사정보 활동비	35,880		종무활동지원	59,166
	⑨ 전북도경			정보비	
	치안정보 활동비	281,110		문화활동지원	
	대공정보 활동비	310,960		정보비	
	외사정보 활동비	33,840		예술활동지원	
	⑩ 전남도경			정보비	
	치안정보 활동비	449,580		종무활동지원	
				정보비	

※ 이 표는 9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 목 명세서에서 기자가 추출, 정리한 것이다. 국방부 관련 정보에 산은 누락됨(2급 군사기밀 사항).

각 부처에 계상된 정보비들은 총액만 명시되어 있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단지 몇몇 각목은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외무부 소관의 기관운영 특수활동운영비 중 정보비는 해외 주재 안기부 요원들의 인건비와 정보비로, 정계외교 특수활동비 중 정보비는 로비활동비로 유추할 수 있다.

그나마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노동부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이다. 노정사업 추진비(89년까지는 노사분규 예방촉진비였음)와 노사분규 조정 활동비로 이루어져 있는 노동부의 이 정보예산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그나마 조금 드러났다. 지난해 노동부 본부 감사에서 정보비 운영에 관한 서류검증을 통해 ▲ 정 보수집비 ▲ 노·사·정 간담회비 등에 드는 공작비 ▲ 지휘활동비 등 네가지 세목으로 분류돼 집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정감사 때 노동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노동부가 일부 공개한 「비밀 문서 수발대장」을 보면 안기부가 이 정보 비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표3〉은 88년1월부터 89년 8월31일까지
의 안기부와 노동부 사이에 주고 받은 비
밀문서를 기록한 대장이다.

〈표3〉에서 보면 정보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안기부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안기부 : 정보사업 예산 지침을 노동부에 시달→② 노동부 : 정보사업 세부적인 시행계획안과 그 승인 신청 요구안을 안기부에 제출→③ 안기부 : 노동부의 계획안 중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지시, 그렇지 않으면 승인→④ 노동부 : 안기부에 정보사업 예산 요구안 제출→⑤ 안기부 :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시→⑥ 경제기획원 : 안기부에서 지시한 예산을 노동부에 액면 그대로 예산 지출→⑦ 노동부 : 예산집행, 그후 안기부에 예

산집행 심사 및 분석보고서 제출→⑧ 안기부 : 보안감사 실시.

정보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집행되는 정보예산은 과연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가. 89년4월23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작성, 안기부에 보고한 「국가정보자료 수집 자체 계획서」라는 문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노정 32200-17'이라는 비밀문서 번호가 표기된 이 문서에 의하면 이 정보에 산으로 노동청이 '▲ 외부세력 개입 차단, 연대활동 저지 ▲ 자율적으로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 도모 ▲ 관계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목적으로 전 근로감독관에게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것을 지시했음이 드러난다.

노동청이 지시한 주요 정보수집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학연대 실태 및 배후세력의
지원 동향. 둘째, 근로자·노조·기타 근
로자 단체의 특이사항. 셋째, 위장취업 근
로자의 인적사항·학력·활동사항. 넷째,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실태. 다섯째, 민주노
조 지역별 결성실태 등.

이 문서에서 나타난 노동청의 정보수집 활동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민주노조와 노동운동단체 등의 동태를 파악, 안기부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안기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사전적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부에 계상된 정보예산은 노동부의 고유업무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되며 보다는 안기부의 민주노조와 민주노동단체에 대한 탄압공작비로 쓰이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다른 부처의 정보예산은 비록 그 내역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노동부와 유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안기부 정보비 총액

〈표3〉 노동부의 ‘비밀문서 수발대장’

① 88.1.1~89.8.31 비밀접수대장

접수 번호	월 일	불통기호및 문서 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122	88. 4. 1	기기 300-1008	국가안전 기획부	기예 (기획 예산)	2	89년도 행정부 정보사업예산 편성 지침.
215	88. 7.13	기기 300-2411	국가안전 기획부	기예	2	88년도 정보사업 운영계획 수립.
281	88.10.21	기감 021-3441	국가안전 기획부	노정 (노정 장관)	2	88년도 행정부 정보및 보안법무 각사 결과 시찰
330	88.12.26	기기 300-4083	국가안전 기획부	기예	2	89년도 행정부 정보 사업예산 조정서 통보
119	89. 8.31	기기 300-830	국가안전 기획부	노정	2	90년도 행정부 정보사업 예산 편성 지침.

② 88.1.1~89.8.31 비밀발송대

발송 번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 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4	88. 128	기예 1022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7년도 정보사업 예산 심사분석 보고.
11	88. 4.20	노정 322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정보사업 세부시행 계획.
13	88. 5. 3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9년도 정보사업 예산 요구(안) 제출.
19	88. 6.27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정보사업 운영계획 승인 신청.
24	88. 7.21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8년도 상반기 정보사업 예산 심사 분석 보고
34	88.11.21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정보사업 운영계획 승인 신청.
36	88.11.24	노정 322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노사대책비 집행 계획서 제출.
42	88.12.27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9년도 정보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계출.
1	89. 1. 4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9년도 정보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2	89. 1.19	기예 931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9년도 정보사업 예산 심사 분석 보고.
10	89. 4.12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지휘활동비 전용 요구.
17	89. 4.28	노정 322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89년도 국가정보 세부 자료 수집계획 수립.
19	89. 5. 8	기예 300	장관	국가안전 기획부	2	90년도 정보사업 예산 요구서 제출.

결산심의가 끝난 88년의 경우, 안기부가 사용한 정보비는 일반예산 1백24억여원,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중의 81.3%인 1천7백46억여원, 9개 부처에 계상된 정보예산 6백여억원을 합하여 총 2천5백억 가량 된다. 이는 안기부 본예산의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기부의 정보비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기부 자체 예산인 일반예산, 둘째,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셋째, 9개 부처에 분산, 계상된 정보예산 등이 그것이다.

결산심의가 끝난 88년의 경우에 안기부가 사용한 정보비는 일반예산이 124억여원,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중에서 82.3%인 1천746억여원, 9개 부처에 계상된 정보예산 6백여억원을 합하여 총 2천5백억 가량 된다. 이는 안기부 본 예산인 일반예산의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국민의 혈세가 정권안보적 차원의 공작비로 이용되어 사회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안기부법은 하루 빨리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일 뿐이지 안기부 정보비의 전부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안기부 예산은 예를 들어 해외 주재 각급 공관에 파견돼 있는 안기부 요원들이 공식적으로는 외무부 직원으로 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비 이외의 인건비가 외무부 예산에서 집행되는 등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국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상당하다고 한다. 부수적이긴 하지만 안기부 요원들이 각 출입기관에서 기밀비로 받는 기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예로 87년 8월 창원공단의 (주)통일의 노동자들이 회사노무과에서 발견한 「87년도 비자금 사용계획안」이라는 회사 기밀문서에 따르면 87년도 한해에 안기부에 기밀비로 지급하는 액수는 1천80만원이었다 (본지 제13호 참조). 또한 85년 10월 인천 대학에서 발견된 경리과의 한 문서에서도 안기부 요원들의 정보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안기부 정보비의 총규모는 더욱 엄청날 것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은 국방·내무·교부 등 조례원칙 쓰는 몇몇 부처를 제외하면 단연 수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시 말해 다른 부처의 경우 대체로 고유사업비가 예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같은 성격의 사업비가 아예 없는 안기부 예산은 5천~6천억원 상당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같은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보안사의 1년 예산이 2백수십여억원이라는 사실과 대비하면 안기부 예산이 얼마나 거액인가를 알 수 있다.

안기부 정보비 내역 공개돼야

안기부 예산이 이처럼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내역은 안기부법·예산회계 특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기부의 정보비는 본래의 업무보다 민주세력 탄압 등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안기부가 대공업무와 해외정보 수집 등 고유업무에 전념해왔다 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일이 없다"며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안기부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고유업무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 내역과 집행방식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한 심의·감독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기부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선 안기부의 막대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박상천 의원은 "그간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것은 정보 수집 및 수사권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을 동시에

내 기록부									
<i>예산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i>내부부처별 예산</i>									
<i>국방부</i>									

보안사·안기부 끄락치공작

이재화(본지기자)

정보기관의 검은 손길이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조직까지 파고 들고 있다.
 '음지에 피는 독버섯' 끄락치 공작,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포섭된 끄락치의 활동양상은? 그 현장을 추적한다.

음지에서 피는 독버섯

'녹화사업'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5공시절 보안사 주도로 실시된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학원프락치 공작이 6명의 '의문사 사건'으로 벗발친 여론에 밀려 사라진 후, 한동안 잠잠하던 학원프락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국민대 김정환씨(23)의 '보안사 생매장 협박 끄락치 강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연세대·이화여대 등 곳곳에서 안기부·보안사가 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대 김정환씨는 "국민대 교지에 실린 북한관련 논문으로 수배된 전 교지편집장 김종덕씨(23)와 전 편집위원 김황영씨의 거처를 대하며 생매장 고문을 당하는 등 보안사로부터 학원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는 요지의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더 이상 자신과 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절박한 소망과는 달리, '반국가단체 전대협'이라는 그림표를 그리고 있던 보안사·안기부는 임수경씨 방북을 정점으로 전대협 수배자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수배자 주변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끄락치 활동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이화여대 박아무개씨(23·사대)는 지난 9월 31일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안기부 요원'이라고 밝힌 2명의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영장 없이 남산안기부로 끌려가 나흘 동안 전대협 정책실장 정은철씨(22·연대

**학생운동 탄압을 묘
밸정 김태수
조사 보고서**

<자술서>

*밀장 김태수가 심문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과 김병국 국원에 대한 용서를 자필로 남긴 내용.

비록 끄락치였지만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었고
생각을 한다.
김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꼭 꼭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한다.
지금하고 무슨 봄에도 면밀히 해야,
아무리 끄락치 활동이라도 근본을 지나야
죽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00이상은 무조건 줄 흘리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처럼 놀고 싶은 일 때문에 항상 어려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알고 100%도 않은 일 때문에 항상 어려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00 정도 많은 내 마음의 금액에서 문제를 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경이 되어야지요
여장금 경찰로 진정하지
국장은 봄이 봄을 사랑하니 항상 편하게
지내십시오.

정의 4)와의 관계 및 정씨의 소재지 등을 추궁받았다. 박씨가 연행된 것은 수배된 정씨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준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별 소득이 없자, "교사인 어머니를 해직시키겠다" "고3인 남동생을 데려다 조사해 입시공부를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에게 "서경원과 고금숙도 우리들 말 한마디로 내연의 처로 기정사실화됐다"며 "너도 말 안들으면 그렇게 만들어 혼사길을 막아 놓겠다"고 협박,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심약한 성격을 가진 박씨는 이러한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정은철 행적 추적에 협조하게 되었다고 털어 놓았다.

또한 연세대 김정애씨(사회 4)도 안기부에 끌려가 전대협 평양축전 정책위원장으로 수배된 박종렬씨(연대, 경제 4)의 은신처를 댈 것을 강요받으며 끄락치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네 가지의 끄락치 유형

이같이 끄락치 강요사례가 속출하자 전대협 당사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안기부·보안사가 진행한 공작 중 실패한 공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끄락치공작이 없다면 안기부·보안사의 정보활동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족민주 운동권 도처에는 끄락치들이 음지의 독버섯처럼 암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 핵심조직에 침투한 고정 끄락치에서부터 단순정보제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끄락치의 숫자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대협의 한 간부는 말했다.

끄락치 공작은 정보기관의 생명인 만큼 그 유래는 기관의 출범과 함께 한다. 아울러 공작의 수준은 정보기관의 생리상 운동의 발전과 함께 높아진다. 60~70년대의 끄락치 활동은 대체로 정보수집 등에 머물렀으나 80년도에 들어서서는 운동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 핵심조직 내부에까지 침투하여 내부 동료들을 이간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조직자체를 왜해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원 및 학술계에 침투, 투쟁노선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끄락치를 유형화시켜 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정보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핵심조직에 침투하는 경우이다.

두번째 유형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예컨대 여자문제, 정보기관에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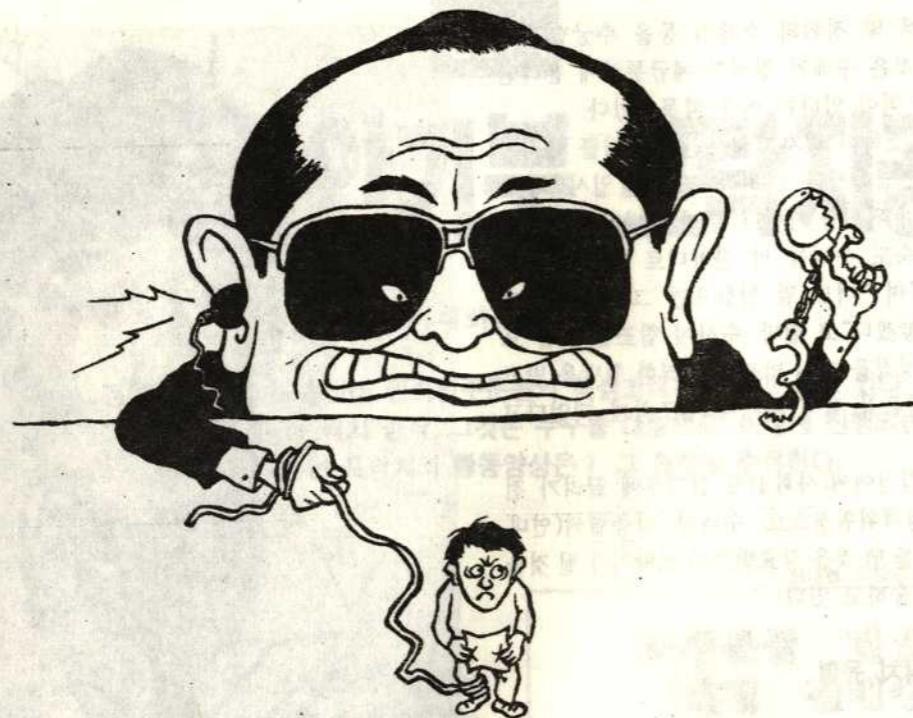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의 만행'을 폭로하는 김정환씨.

한 사실 등)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며 끄락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세번째 유형은 운동을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시국사건과 관련되어 '끄락치 활동'과 '구속' 중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받고서 끄락치가 되는 경우이다.

네번째는 생계곤란자나 부랑자들에게 생계수단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포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개 단순정보수집 차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끄락치는 대중집회나 학생회 및 써클을 배회하다가 자주 발각되곤 한다. 한 예를 들자면 86년 9월경 고대 경영학과 대학생이라고 사칭, 써클과 학생회를 기웃거리다 학생들에게 적발된 정아무개씨(23)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네번째 유형과는 달리 첫번째·두번째·세번째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면 끄락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보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프



프락치를 만들며 그 프락치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대의 프락치 사건 '부울총협사건'

지난 7월 15일 부산대에서는 학생운동사상 최대의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아닌 '부산·울산총학생회 연합'(부울총협)의 선전국장이었던 김태수씨(부산외대 국문과 84학번)가 그 장본인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그의 직책도 직책이었지만 그 활동기간이 4년 동안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울총협은 89년 1학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부터 내부에 프락체가 있음을 확신했다.

▲89년 3월 텁스피리트 저지투쟁의 주역인 '부산지역 청년학생 애국결사대' 대장 김복남(3기 부울총협 사무차장)의 행적이 정보기관에 자세히 누설됐다는 점. ▲89년 4월 중순경 인제대에서 가진 대표자 연설회의에서 배포된 제안용문건(평양축전투쟁의 관점 등 4종)이 배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정보기관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 ▲집행국 조직원의 가방이나 개인소지 문건·회의록·수첩 등이 분실되었다가 1~2 일 후에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1학기 내내 근

거없는 내부 분열성 유언비어가 난무했는데 그 출처가 모대학과 집행국이라는 점(예컨대 모대학 학생회장이 모여 학교 여성활동가를 임신케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

▲동료들이 피검되어 조사받던 중에 집행국 내에서 내밀하게 진행된 일정을 정보기관에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의문점을 종합한 결과 부울총협은 자체에 '조직검열위원회'를 결성, 조직검열사업에 착수했다.

검열위는 우선적으로 집행국 개개인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했다. 개개인의 행적조사, 미행, 외과조사, 면담 등을 통한 검열을 한 결과 프락치 협의자가 선전국장이었던 김태수임을 밝혀냈다.

부울총협이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3월 2일 김씨가 집행국 차장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김과 접촉하고 있던 주변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주로 기존에 프락치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부산대 행정대학원의 조아무개씨 등) ▲비공개 문건의 출처 및 인쇄소 소재 파악에 김씨는 유난히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원들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만남 속에서는 칭찬을 해주다가 다른 동료에게는 비난을 일삼아왔다. ▲사

안별로 중요한 사람이 방문하거나 비공개 자료가 들어올 때면 김씨는 선전국 일을 제쳐두고 국원과 방문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엿듣거나 의식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무조건 복사한 점. ▲악성루머가 대부분 김씨와의 관련 속에 나왔다는 점.

검열위는 이상의 근거를 밝혀내고 "김태수가 프락치의 장본인이며 그 역할이 대중조직의 동태파악과 더불어 비합법조직의 조사 및 파괴에 있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고 김태수를 불러 심문을 했다. 심문은 20여 명의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 청문회식으로 진행됐다.

아버지가 아들을 프락치로 만들어

김태수는 심문과정 초기엔 프락치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했으나 검열위에서 수집한 증거를 하나하나 열거하자 안기부의 지시를 받은 프락치임을 시인했다. 김씨가 이때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85년부터 프락치 활동을 시작, 85년 노동자 야학인 심평야학조직을 파괴했으며 각 학교별로 프락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함께 프락치 활동에 대한 세부교육을 받았고, 그후 군입대하여 군에서(방위병) 정보사찰임무를 받았었다고 했다.

장시간의 심문을 통해 검열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

▲가족사항 아버지 김순창씨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경북대를 중퇴한 자로 현재 부산시경 공안분실(일명 '해양기지 개발공사') 학원담당 형사이며 10년간 활동했음.

▲밀정하게 된 동기 89년 8월 김태수의 아버지로부터 프락치 제안을 받았음(김태수는 이 대목에서 진술을 몇 차례 번복했다)

▲정보연락 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진행됨.

▲연락방법 주로 전화연락을 취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암호를 대고(암호명: 성악산, 코드번호: 107) 전화를 한다. 접선장소는 주로 집을 사용했으며 밖에서 접선할 땐 서면 소재 족발집을 이용했다.(이 진술에 대해 검열위관계자는 대연동 소재 안전가옥 내부설계까지 그린다거나 전화번호를 대는 것이 시경분실임으로 미루어 보아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림.)

▲접선횟수 주 2회 접선을 했고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 그때 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접선.

▲보고형식 동향보고서를 접선 때마다 작성하여 보고함.

▲프락치 활동 중 보고했던 내용 부울총협 집행국 전간부의 동향보고 및 사상의식 그리고 독서증인 책, 국장회의·전체회의·선전국회의, 내부문건·회의록 등.

▲전대협에 대한 정보 보고내용 전대협 문건, 전대협 내부체계, 전대협 선전국 간부들의 가명, 축전 전체 일정 및 투쟁 프로그램 등을 보고.

▲학교별 프락치 세포작업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나 지속적인 세포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함.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매월 20만원 상당의 용돈을 아버지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해외유학 및 취업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약속받았음.

그러나 심문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관계자들은 김씨의 이러한 자백의 상당부분이 축소·은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활동시기와 지시장소에 대해서는 김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김씨의 수첩을 보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영어 약자로 기록했고(선전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전화통화 때 지정된 암호를 사용한 것(예를 들어 문건과 조직원의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접선을 할 때에는 전화를 걸어 "사상에 빨래하려 간다"로 접선 대상자와 미리 연락을 한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수차례에 걸쳐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매달 월급 지급 및 유학담보는 시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활동내용이나 활동범위를 보더라도 김씨를 지시한 기관은 시경차원을 넘어선 정·보기관일 것으로 보이며.

셋째. 그가 프락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적어도 85년부터 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복무했다는 신평 3대대 예비군 동원작전과를 제대한 사람과의 대질 신문에서 그는 일상업무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군대생활은 2차전을 때 말한 바대로 정보사찰업무를 한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 또한 복학한 후의 행적을 미루어 보아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그가 85년부터 프락치 활동을 해왔다면 어떻게 해서 부울총협 선전국장까지 맡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그는 심문과정에서 복학 후 "자신은 소속 써클이 없어 신임을 얻기 위해선 시위가 있을 때엔 맨 앞장 서서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그는 그후 과 학술부장을 거쳐 총학생회 조국통일총전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작년 6·10대회 이후, 조통특위장을 그만두고 한달 동안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천반 타천반으로 부울총협에 들어오게 됐다. 이 한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지만 그후 부울총협에서의 그의 활동 수준을 미루어 보면 짐작할



부울총협 프락치로 판명된 전 선전국장 김태수씨.

수 있을 것이다.

핵심 활동가에서 프락치로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이 첫번째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 한다면 '서울지역 남부노동자 연맹'(남노련) 사건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86년 6월 서노련의 선도적 정치투쟁을 비판하고 대중조직·대중투쟁을 역설하면서 출범한 남노련은 확실하게 밀던 한 조직원의 프락치 활동에 의해 참혹하게 와해되었다. 그가 바로 송용일(26·연대 경제학과 졸업)이다.

남노련 의장이었던 최규엽(35)씨에 따르면 프락치로 지목된 송용일은 그간 품성이 뛰어났고 일도 아주 혁신적으로 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또한 송씨와 함께 학생운동을 하고 그후 노동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연세대 졸업생 손아무개씨도 "자신이 본 그는 적어도 87년 이전까지는 아주 철저한 투사였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프락치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남노련 관계자들은 정확한 증거를 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4·13조치'라는 서슬퍼런 불호령이 내려지기 직전인 87년 2월경 1주일간 실종이 된 후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 실종 기간 동안 그는 아마도 육군보안사에 끌려가 구속과 고문의 위험

앞에서 동료의 행적추적에 협조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 되어 프락치 활동을 계속 하게 됐을 것이라고 평소 그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어쨌든 그의 '증발사건' 이후 같은 조직원들이 속속 보안사에 잡혀갔다. 송씨집에 동료들이 놀러갔을 때 형사들이 포진해 있는가 하면 87년 4월26일 도봉산 남노련 지부대표자 모임에서는 회의 도중 완전무장한 보안대 소속 40여 명의 병력이 포위, 참가한 10명의 조직원이 몽땅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이 모임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내부에 프락치가 있지 않으면 정보가 빠져 나갈 수가 없다고 관계자들은 판단했지만, 송씨에 의한 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규엽씨가 송파보안사에 연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씨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들로부터 내부에 프락치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힌트를 받아냈다. 그후 최씨는 88년 12월 석방되자마자 프락치 조사위원회를 구성, 색출작업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송용일이 프락치였음을 결론지었다.

구학련 프락치 배정한의 활약상

다음으로 세번째 유형의 대표적 사례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프락치 사건을 보자.

구학련은 80년대 한국학생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으면서 86년 3월29일 출범한 철저한 비공개 활동가조직이었으나 프락치 배정한(서울대 공법 83학번)에 의해 결성된 지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와해되고 말았다.

배정한의 활약상에 대해선 그간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구전되어 왔다. 기자는 얼마전에 석방되어 나온 구학련 배후 총책 김영환씨(26)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철저한 위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암약해왔다"는 것 등 그간 알려진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과장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김영환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락치 배정한은 83년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 김영환씨가 소속된 '단재사상연구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비록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재치와 탐구욕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는지(아버지가 병원원장)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절도가 없고 게을렀고 운동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과는 달리 규율 있는 생활을 하던 김영환씨를 잘 따랐다.

그러나 85년 8월경 김영환씨가 반제파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어 수배되면서부터 그는 혼들리기 시작했다. 그후 86년 3월 구학련이 결성된 때 그는 하부성원으로 참여했지만 엄격한 조직규율에 견디기 힘들어 했고 편안하게 살고자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배씨는 그해 5월 사실상 조직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 후인 8월, 뜻하지 않은 사건이 그에게 찾아들었다. 다름 아닌 「들불」지 사건이 발생, 조직원 이정훈이 체포된 것이었다. 이정훈은 조사과정의 위협 속에서 배정한의 이름을 불었다. 배정한을 불면 조직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배씨는 뜻하지 않게 치안본부에 연행되었다. 이것이 배씨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연행된 배씨는 치안본부에서 "김영환은 간첩이다" "너는 그에게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했으니 최소한 징역 15년~20년은 살게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구속'과 '수사협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결국 '수사협조'의 길을 택했으리라고 김영환씨는 짐작하고 있다.

김영환씨의 이러한 추론은 나중에 배씨가 동료들에게 "김영환만 잡게 해주면 김씨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을 봐주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동요됐다"고 털어놓은 것과도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프락치가 된 배씨는 박금섭만 찾으면 김영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박금섭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박씨는 결국 그 약속장소에서 연행되고 말았다.

그러나 박씨를 체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김영환을 체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배씨는 이곳 저곳을 통해 김영환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김씨의 주위사람들과 함께 청년학생동맹을 만들었다.

그러나 배정한은 김영환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 김영환이 체포되는 과정에 배씨가 관련되었다는 소문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김영환 스스로가 증언했다. 이상이 프락치 배정한의 활약상 요지이다.

'안기부의 실수'로 프락치를 잡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배씨가 프락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은 했었지만 확신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가 프락치임을 밝혀낸 것은 김영환에 의해서다. 김씨는 공교롭게도 안기부에서 조사받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아

냈다. 안기부에 연행된 직후 김씨는 배씨의 행방에 관한 심문을 받았는데 그후 5일 후쯤 되니 다른 동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배씨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배씨가 치안본부 프락치임을 안기부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씨는 추정한다. 안기부에서 수사가 끝나갈 무렵 김씨는 수사요원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배씨가 프락치임을 확인했다.

수사요원 : 네 주위에 경찰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을 아느냐.

김영환 : 모른다.

수사요원 : 그러면 왜 배정한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았느냐.

김영환 :

수사요원 : 배정한처럼 세상을 약계 살아야지 너처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구학련 프락치의 장본인이 바로 배정한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은 출소자를 통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후 배정한은 양기철(서울대 국제경제 82)의 소개로 녹두출판사에서 발행한 『녹두서평』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녹두서평』의 필자와 제작과정 등을 파악하여 밀고했을 것으로 당시 이 출판사 편집장 신경식씨(30)는 추정한다. 그는 올해 2월 외국어대학원 동구지역학과를 졸업하고 형가리로 유학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한뿐만 아니라 부울총협의 김태수와 남노련의 송용일 등도 기존의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유학을 갔거나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대 김정환씨의 경우 용단을 내려 양심선언 후 동료학생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엇갈린 모습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반인륜적 행위 없어져야

양심 팔기를 강요하는 프락치 공작. 그것은 이 시간에도 정보기관에 의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울총협의 한 간부는 힘주어 이렇게 말한다.

"반인간적인 수법으로 동지를 팔아넘기게 하는 안기부·보안사의 파렴치한 행위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 인간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도 안기부·보안사의 파렴치 행위에 정면 대결해야 한다."

노동/현지취재

나는 안기부의 프락치였다

마창노련 프락치사건의 진상

이종현(자유기고가)

마산·창원지역의 한 '노동운동가'가 제발로 안기부를 찾아가 그들의 프락치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 주인공은 이순용씨. 그는 왜 '어제의 동지'들을 배신하는 길로 들어섰는가? 또 안기부는 그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마창지역 노동운동권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순용 프락치사건'의 전모를 추적해 본다.

'남도주체사상연구회'와 '프락치 폭행 사건'

"지난 2월 17일 경남 마산 고속 버스터미널 부근 길다방 건물벽에 '경축 주체사상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김정일 동지 탄생 48돐'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 플래카드는 길이 4m 52cm, 폭 52cm 규격의 흰색 옥양목 천에 검은색과 청색 테이프로 된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남도주체사상연구회' 명의로 돼 있었다. 경찰은 불온세력 또는 극렬좌경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2월 1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한편 3월 7일에는 마산 일꾼노동문제연구원 상담원인 박기영씨 등 4명이 '해고노동자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전혀 별개의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안기부로부터 돈을 받고 프락치활동을 한 이순용(29)이라는 인물을 '고리'로 연결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께부터

'남도주체사상연구회'의 조직실체

와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는 안

건의 줄거리다.

노동운동가에서 안기부 프락치로

이순용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결핵병원에서 폐결핵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이후 안기부와 더이상 접촉하지 않아 신분이 자유로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씨는 지난 3월 8일께 구성된 '노동운동 탄압저지 및 안기부 프락치공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의 요구에 의해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 프락치가 된 경위와 활동상황 △ 3월 5일의 '도원호씨집 사건' △ 3월 5일 이후 안기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 6월 4일에는 본지와 만나 그간의 활동과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순용씨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83년 4월 서울에서 고졸인정 검정 고시에 합격, 대학진학을 준비하다가 87년 2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길을 가기 위해' 마산으로 내려간다. 마산에 내려온 이씨는 87년 5월 창원공단에 있는 오성사에 입사, 같은 해 7월부터 노조 설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파업농성을 주도한다. 이에 따라 이씨는 10월께

馬山輸出自由地域 · MASAN F



지난 불 마창지역 노동운동권은 '안기부프락치사건'으로 한차례 시련을 겪어야 했다.

회사로부터 현장이탈, 명령불복종으로 강제해고를 당하게 되고 '어용노조민주화추진위'를 결성, 주도했다. 이씨는 또 88년 7월 한국TC 전자 구사대폭력사건 때 노무과장 을 구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으며, 89년 10월부터는 오성사노동조합에 상근하면서 노보제작 등 열정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

당시의 심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당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2월 10일쯤 헤어진 것으로 기억되는데 세상을 살기도 싫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다음은 이순용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안기부 사람들과는 어떻게 만났는가?

"대공상담소에 공중전화로 연락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안기부 직원 2명이 나와 만났다."

- 할 이야기란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해고자라는 점을 말하고 최아무개양을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원래 내가 88년 7월께 소모임을 만들었을 때 같이 학습했던 여자다."

- 그때 안기부 직원의 반응은?

"단지 그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될 수 없으나 을 임투때에는 구속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노조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나에게 협

조할 것을 요구했고 나는 응했다." 이날 이씨는 여관방에서 안기부 직원 4명과 함께 자신의 신상내력을 작성하고 안기부가 요구하는 마산·창원지역 공개단체 간부들의 명단과 활동상황을 알려주었으며, 연락방법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하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전네 받았다.

이씨는 또 12월 23일쯤 다시 안기부 직원을 만나 도장, 사진을 마련하여 서약서(안기부는 이를 '입사원서'라고 부름)와 소정 양식의 서류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월 30만원의 급료(활동비)를 매달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동지를 판 대가, 매달 30만원

그러면 1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이순용씨와 안기부 사이에 있었던 내막을 대책위에서 만든 백서를 통해 살펴보자.

이 백서는 3월 4~5일의 1차조사와 4월 16~17일의 2차조사를 종합한 것으로 모두 이순용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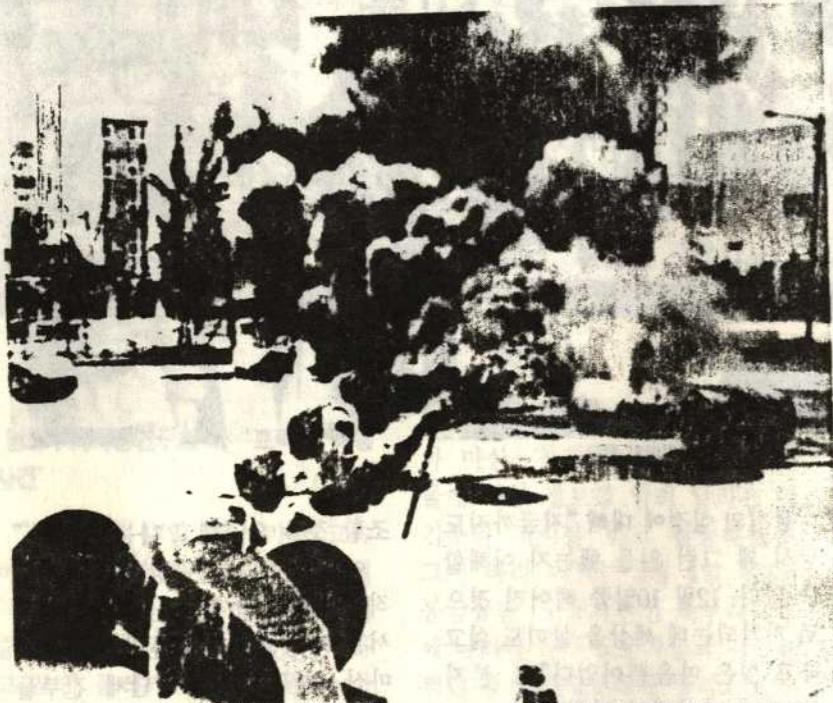
직접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씨가 고의로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담고 있다.

△1월 10일 안기부 직원과 만나 정보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음. 또

이를 친회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안기부 직원이 다음날 이를 철회시킴.

△1월 31일 ‘친미파 쇼연합’에 대해서 묻고 ‘대책위가 구성될 것인가’를 질문.

△2월 7일 정보비 30만원을 받음.



투쟁터에서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온 마창지역. 이제 조직보안에도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남도주체사상연구회’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씨 줄 것을 주문받음.

△1월 18일 진해 군 끌프장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안기부 차장’과 만남. 이때 차장은 ‘남도주체사상연구회’의 유인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학습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단서만 주면 팔자를 고쳐주겠다고 말함. 안기부 직원에게 10일에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씨를 설득하면서 “다른 프락치들도 잘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함.

△1월 20일 안기부 직원과 통화. 이씨가 “해고자들이 일일찻집을 여는데 경찰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남도주체사상연구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함.

△3월 3일 ‘봉암공단체육대회’에서 노동자, 특히 학생 출신자의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 정보비 30만원을 받음.

이씨 자백의 의문점

이후 3월 4일 ‘도원호씨집 사건’이 터지고 이씨의 프락치 활동 사실이 마산·창원 지역에 퍼졌다. 또 대책위가 구성되어 ‘이순용 프락치 사건에 대한 입장’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각종 집회를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하자 이씨와 안기부의 관계는 정리 단계로 접어든다.

“3월 6일 안기부 사람이 찾아와 ‘이제 너는 저들에게 가봤자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편이 돼 살라’고 회유했다. 또 대책위 유인물에서 내가 동료들에게 프락치 활동 사실을 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너는 둑민을 뉘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안기부 직원들은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업을 벌였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말소된 주민등록, 의료보험 등을 복권시키고 오성사와 퇴직금으로 1천3백50만원에 합의. 이 일을 안기부 직원이 대신 해줌.

△3월 14일, 29일에는 3월 4일 ‘도원호씨집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 조서를 다시 작성. 이때 안기부와 관련된 부분(안기부 차량 번호 등)을 검찰서기 입회하에 삭제함.

△4월 3일 “양심선언을 하더라도 있었던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요구.

△4월 13일 “마산 지역이 아닌 울산이나 기재동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제의.

그러나 대책위는 1차, 2차 조사 작업에도 불구하고 프락치 활동에 대한 이씨의 진술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은 ‘프락치 활동은 89년 12월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넘겨진 정보는 이순용씨가 밝힌 것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대책위는 이순용씨의 1, 2차 조사에서 서로 진술이 다른 점이 있고 또 증거가 있는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책위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씨는 “나의 활동에 대해 의심을 갖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정일 생일 축하 플래카드 사건 조작’

대책위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은 안기부가 진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풀릴 길이 없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이순용씨의 경우는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간의 진술이 검증될 수 있다고 하겠다.

-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다. 구속자 등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안기부에 대해 할 말은 없는가?

“내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안기부에 대한 적개심이 방만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이순용씨는 6월 8일 손택만·허태완씨 등 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을 위해’ 법정 진술을 했으며, 또 구속자 가족들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이순용 프락치 사건’을 바

라보는 많은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조직 유무조차 분명치 않은 ‘남도주체사상연구회’의 플래카드 사건을 안기부가 이순용씨를 이용하여 ‘조직 사건을 조작’ 하려다 실패했으며 대신 일꾼 노동 문제 연구원을 ‘이적단체’로 몰았다는 것이다.

즉 플래카드가 걸린 데 대해 △ 건물 밖으로 플래카드를 걸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분이 필요하며 △ 양덕파출소와 지척의 거리에다 그것도 퇴근 시간 쯤이어서 목격자가 있을 법도 한데 없다는 데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황아무개씨는 “플래카드 사건은 마산·창원 지역의 노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으로 본다. ‘남도주사연’ 같은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중성도 없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6월 4일 마산 지방법원에서 열린 ‘일꾼 노동 문제 연구원 이적단체 사건’ 1심 재판에서 박기영씨는 모두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경남도 경 공안 분실에서 2번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도주체사상연구회’와 관련된 사실의 인정을 요구하는 협박,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자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 ‘일꾼’의 활동, 개인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86년 이후의 모든 활동을 이른바 NLPDR론에 맞추어 일꾼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는 경찰·검찰이 서로 약합하여 ‘일꾼’을 이적단체로 조작하여 활동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비열한 노동 운동 탄압 음모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책위에서는 ‘남도주체사상연구회 사건’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또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문제점으로는 또 이씨가 프락치임을 동료들에게 고백했을 때 정확한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방치’해 프락치 활동 기간을 2개월여 동안 연장시켰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책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씨를 잘 알고 책임 있게 수습·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세웠다면 피해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는 사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개인주의적 행동이 낳은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마산·창원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준 것은 웬만한 마산·창원 지역의 활동가라면 다 알고 있었던 이씨가 ‘제발로’ 안기부를 찾아가 프락치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일꾼 노동 문제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밭이 넓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다. 문제는 이씨 개인의 잘못된 운동관에도 있지만 해고자를 바로 활동가로 인식하는 우리 내부에도 문제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산·창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사건을 낳은 ‘이순용 프락치 사건’.

마창노련 홍보 실무자 이미숙씨의 말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활동가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활동가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대내·대외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런 때 만이 적들의 프락치 공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기부의 지하언론 「내외통신」

북한소식의 유일한 창구인 「내외통신」. 일반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반통일적 언론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다. 이 「내외통신」이 안기부에 의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본다.

양인환(자유기고가)

기대 저버린 언론의 북한보도

최근 몇년전부터 통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에는 북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북한소식란을 신설했다.

『조선일보』가 언론사로는 최초로 88년 6월 북한부를 신설하자 내부에서 통일관련 부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KBS도 89년 3월 보도본부 산하에 부장을 포함 모두 8인으로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했다. MBC도 지난해 3월 부국장급의 부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북한부를 만들었다. 나머지 신문들도 독립부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전담기자를 두어 주 1~2회씩 북한소식을 고정란을 통해 알리고 있다. 냉전시대의 향수에 마지막까지 젖어 있던 제도언론의 그러한 노력들은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언론매체에서도 남북화해의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갖게끔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냉전체제를 언론이 더욱 교묘하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당초 "북녘동포들의 삶을 사실 그대로 알림으로써 분단에서 파생된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통일의 그 날에 대비한다"

는 취지가 이처럼 더럽혀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차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겨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언론인이 소극적이고 비주체적 태도로 정권에 악용당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알아서 기는 굴종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데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안기부 소유물 '사단법인 내외통신'

그러나 구조적 한계의 문제 또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는대로 언론의 북한취재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모든 통일운동을 국가보안법의 옥가미로 묶어 놓고 조국의 분단상황을 정권안보에 악용함으로써 존립하고 있는 현 정권은 이른바 '남북한 창구단일화'를 언론에도 강요하고 있다. 그 일관된 창구가 바로 내외통신이다. 제도언론의 북한소식 보도가 안보성 보도나 비방성 보도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내외통신의 기사유통 매파니즘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에 대한 취재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언론은 북한소식 보도의 90% 가까이를 내외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사실은 언론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즉 통신사라고 하면 신문이나 방송사업체 등에 보다 많은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며 기사를 제공받은 신문이나 방송은 제공받은 기사 가운데

필요한 기사만 골라서 보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기 마련인데, 왜 내외통신의 기사를 받아 보도하는 제도언론의 북한소식란은 비방과 체제우월성 강조로 얼룩져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외통신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법인 내외통신'은 '관영 안기부통신'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이 내외문제연구소와 함께 만들어진 것은 74년. 그후 75년 내외문제연구소로부터 분리되어 사단법인 내외통신으로 발족했으며 76년부터는 영문판을 발행, 해외언론기관에 북한관계자료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사옥은 종로 3가 화영빌딩에서 원남동을 거쳐 현재는 남산 안기부 바로 아래인 중구 주자동 42-2번지 6층 건물.

내외통신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와 지시는 종이 한장, 볼펜 하나하나에까지 이를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로 인해 언론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가 형성돼 있으며 이직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외통신의 구성과 기사검열체계

현재 발행인겸 대표는 6년간 국토통일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던 이창하씨. 물론 인사 및 경영권은 안기부에 있으며 모든 임원인사는 낙하산식이다.

역대대표(이기건·박석균·김창순·이욱근·이상구)가 모두 언론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6명의 현 이사는 널리 알려진 여권인사들이다.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표인 이창하와 남재희(민정당 국회의원), 이우세(전『서울신문』사장), 민병천, 윤종현(전『한국일보』논설고문, 금성화랑무공훈장 수상), 정용석(단국대 교수·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장) 등 그 구성이 화려하다. 감사는 김태서씨와 양홍모씨 등 2명. 이들 임원 9명을 포함해 전체사원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외통신은 편집국과 총무부로 나뉘어져 있다. 편집국에는 보도부와 국제부, 조

사부, 자료실, 수신실 등이 있다. 내외통신의 '북한취재' 부서는 바로 편집국 수신실이다. 수신실에는 8명의 수신사가 있는데 24시간을 2교대로 나뉘어 조선중앙방송과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을 직접 칭취해 시록 기록한다. 수신실은 두 방송 뿐만 아니라 구국의 소리방송과 일부 지방방송, 북경방송, 모스크바방송의 조선어방송까지 청취하고 있다.



각 언론사에 배포되는
내외통신 보도자료

수신실은 청취된 내용을 보도부로 넘긴다. 보도부는 넘겨진 내용을 기사화해서 일간판 자료로 만들어 각 신문과 방송에 무료로 배포한다. 조사부는 같은 내용을 1주일 단위로 묶어 주간자료판을 만들며 국제부는 영자판을 만들어 외국공관 등에 배포한다.

그러나 보도부와 조사부, 국제부가 수신실에서 넘어온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 배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작성된 기사는 배포되기 전에 자료실로 넘겨지며 자료실의 자료관리 담당자는 기사를 이문동 안기부로 가져가 검열을 받는다. 기사를 받은 안기부 담당자들은 철저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사를 검열한다.

즉 가급적이면 '안보'를 강조할 수 있는 사실, 가급적이면 북한의 부정적인 사실, 가급적이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은연 중 강조될 수 있는 사실 등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선택한다. 동질감 회복의 매개체로

내외통신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와 지시는 종이 한장,
볼펜 하나하나에까지
이를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관영 안기부통신'으로 불리지는 내외통신

있어야 할 북한소식란이 안기부에서 이미 짓밟히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신실에서 청취된 많은 내용이 국민들의 눈과 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자신들이 '통치권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다.

결국 몇 차례의 여파를 거친 사실들이 기사로 남아 내외통신 총무부로 다시 넘겨지며 총무부는 이를 자료관으로 인쇄,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되는 배포처에 2대의 차량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다.

KBS '멸공의 창' MBC '통일절망대'

천신만고 끝에 신문사나 방송사로 배포된 기사를 받은 담당 기자들은 선택의 폭이 없다. 고정란에 채워야 할 기사량은 일정한데 아무리 당초의 긍정적 취지에 맞는 기사를 고르려 해도 그 기사가 그 기사이기 때문이다.

정치부와 외신부에서 가끔 들어오는 북한관련 기사나 담당 기자가 직접 외신을 통해 취재한 기사가 10~20% 정도 나갈 뿐이다.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는 신문의 경우 내외통신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할 따름이다. 결국 담당기자들은 안기부에서 잘 여과된 기사를 편집해 내보내는 역할 이상의 뜻이 없는 셈이니 의욕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오죽하면 담당자들은 KBS '남북의 창'을 '멸공의 창'으로, MBC '통일전망대'를 '통일절망대'로 부르겠는가.

매일에 휘싸인 채 대북정보의 복마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내외통신은 그리고 보면 통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안기부는 내외통신의 이러한 기사유통 매카니즘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만두는 내외통신 사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의 보안교육까지 시키고 있다고 한다.

언론사라기 보다는 안기부의 대북보도 통제창구인 내외통신. 많은 사람들은 북한관련 보도의 심층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내외통신이 안기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보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전재나 하는 언론구조에서 진정한 남북화해의 기운은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없다. 또 증오와 멸시, 한편으로는 자기우월성의 오만에 가득차 있는 기사가 지면과 화면을 가득 메울 때 통일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그런 기사나 배급하는 내외통신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 언론사가 자체의 여건이나 역량으로는 탑재할 수 없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취재를 금지시켜 놓고 일방적인 뉴스를 강요하는 역할에 이를 때 더 이상 통신사일 수는 없다. 결국 각 언론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있는 실상을 굴절없이 그대로 취재하고 청취해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된다"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취재를 금지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반통일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경제·스포츠·문화교류, 정치적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관련 뉴스만 내외통신에 독점시키는 것도 '스스로의 자신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도 언제까지나 정부의 '따뜻한 배려'만을 기다리며 안기부통신의 편집자로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자료6 우리들의 안방 전화까지도

"도청"

- 블랙박스는 도청장치이다 -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블랙박스에 대한 기사를 보아왔다. 이 글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해서 '도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시각을 가다듬는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기사는, '민주', '노동', '운동권 단체이름' 등의 말이 나오면, 선별도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한 과학기술의 진보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블랙박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강철희 박사팀이 지난 86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이 블랙박스는 서울시내 44개 모든 전화국의 전자식 교환기에 80개가 설치되었다가, 이번 국정감사이전에 감추어졌다. 블랙박스의 연구개발과 설치, 도청업무, 은폐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자료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두가지만 더 알아보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전개시키자. 하나는 '도청'의 구체적인 형태와 기술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과학기술자인 이상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청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도청방법은 첫째,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전화국의 단자판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아예 특정가입자의 선을 관계기관의 전용회선에 연결하여 듣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통화중에 잡음이 생기고, 감이 멀어지고 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화의 시작과 끝난시각, 발신자와 청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전화교환기에 블랙박스를 붙여두어 특정가입자의 모든 통화를 감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음성인식시스템이 붙어 있으니, 전화상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것 같다.

둘째로는 도청기를 통해 일정공간의 음성과 움직임을 탐지하는 방법이 있다. 최첨단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이다. 반도체기술의 발달로 손톱보다 작은 도청기도 개발되었다. 일전에 민청련 청년학교 사무실의 칸막이 벽에서 발견된 도청기는 가로 5cm 세로 2cm 두께 1cm크기이고, 안테나가 20cm, 6V짜리 건전지 2개가 달린 것이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원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형화할수록, 배터리출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요즘은, 상대의 전원에 연결하여 도청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선도청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추적하여 감추어진 장소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과장대역을 이용하고, 잡히더라도 아주 어렵게 잡히고, 다른 잡음과 구별하기 힘들도록 하는 온갖 두뇌게임이 벌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시내 전자상에 가면, 13×33×19mm의 소형 고성능 도청기를 12만원정도에 구할수 있다. 이것은 500m거리에서도 도청이 가능하고, MC-3으로 불리는 동전정도 크기의 도청기는 전화도청과 실내음성을 동시에 도청하는 능음도 할 수 있다. 4~5만원짜리 국산도청기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는 교환실에 도청장치를 하여 특정부서의 전화내용을 도청하여 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알아내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회사간부가 임의의 전화선을 자신의 전화와 연결시켜 감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감청요원' 까지

두어, 사내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고 불평분자 를 적발하는 등 '못된짓'을 자행하는 회사도 가끔 있다. 실제로 전화감청으로 '비위'가 적발되어 목 이 달아난 회사원들도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일요신문 9/24)

깊은 논의를 위해 알아볼 나머지 하나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8 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안녕, 공공복지,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제한하는 방법이나 대상 적용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니까 법률로 내려가 보자.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101조 또한 도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이나 통신에 대해 관계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열과 도청이 횡행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민정당을 통해, 종래의 부적법한 도청관행을 합법화 할 수 있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

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통신비밀침해의 목적·대상·방식·정도 등을 규정하여 '자유로이' (?) 도청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협의자에서 기타 범죄 단체에 의해 계획·실행되는 단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종류의 범죄 협의자에 대해 도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도청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있다. 평민당이 내놓고 있는 '우편 및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도 민정당의 법안에 비해 도청대상을 일부로 제한한 점 등에서 조금은 악용의 소지가 적으나, 현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청을 규제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기관의 도청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오히려 정부와 민정당의 법안에 야당이 동조해 함께 입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한겨레신문 9/10, 9/12, 9/21, 9/26 참조)



전화국 '블랙박스' 설치 시인

통신연구소 개발책임자

140

국정감사를 열흘 가량 앞두고 서울시내 44개 모든 전화국 교환기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를 일제히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이것이 도청장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블랙박스'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의뢰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소인 전자통신연구소가 개발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블랙박스'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의문이 전화국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화국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각 전화국 전자교환실 실장에게 이 박스를 철거하라는 전화지시가 광화문 국제전화국 ITMC실에서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동대문·노량진 전화국 등 서울시내 모든 전화국의 직원들은 블랙박스를 자체적으로

철거하였다.

또 이 블랙박스에서 나온 통신회선이 전화국 바깥 쪽으로 인출됐으나 수만 가닥의 가입전화선과 뒤엉켜 외부로 나갔으므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박스를 설치한 연구원들은 물론 이들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38명의 다른 연구원들도 "안기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과제에서 개발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했으므로 말을 할 수 없다"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전자통신연구소 내에서 'X-프로젝트 팀'으로 불린 이 연구팀은 연구소 1동 3층에 복도까지 막아 철저히 출입이 통제된 연구실 안에서 86년부터 2급비밀 취급인가를 받고 2년 동안 일을

임자는 강철회 박사로 되어 있으며 86년 7월부터 88년 6월까지 2년간 전기통신공사가 36억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체신부가 이 연구를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기통신공사의 한 고위관리는 8일 "이 박스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현재로선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발행된 월간 <말> 9월호는 '검은 귀, 전화도청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블랙박스에 요주의 인물의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그 인물이 어느 곳에 있는 누구와 얼마간 통화했는지를 알 수 있어 도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전자교환기와 블랙박스의 연결상태를 설명하는 그림을 실었었다.

전화국 '블랙박스' 도청장치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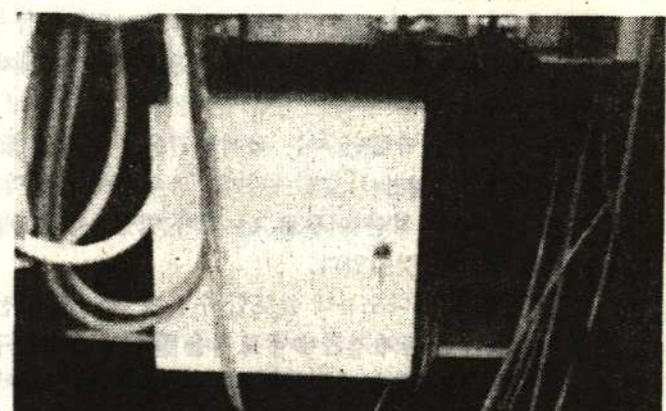
안기부 의뢰 지난해 설치 국정감사 앞두고 철거 용도 베일속 개발연구원 "비밀서약" 입 다물어

로 철거해 참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평민당 채영석 의원은 전화국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중앙전화국과 광화문우체국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추궁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이후 재전기통신공사 사장(현 체신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전화국 직원들은 "지난해 5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들이 정체불명의 이 블랙박스를 서울시내 모든 전화국에 밤새 설치하고 돌아갔으며 박스의 설치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아 도청장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20cm 정도 크기의 이 박스는 전자교환기실 중앙처리장치(CPU) 캐비닛 뒷부분에 눈에 잘 뜨이지 않게 설치됐으며 발·착신자와 통화시간이 기록되는 자기테이프장치 및 CPU와 선으로 연



안기부가 지난해 5월 서울시내 각 전화국 전자교환실 중앙처리장치에 설치한 정체불명의 박스, 자물쇠로 채워진 이 박스 안에는 각종 전자부품이 내장돼 있다.

했으며 어떤 자료도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쇄설기로 자료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통신연구소(소장 경상현)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과제의 명칭은 '비음성 통신용 전송 품질 측정시스템 개발'로 연구책

〈신동호 기자〉

〈한겨레 8p.p.p.〉

141

검은 귀, 전화도청부대



도청녹음기 틀면서 “순순히 대라”

70 년대초에 중앙정보부 어느 수사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화했지?”

“저는 그분한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전화했었잖아.”

“아닙니다.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의 실랑이에 지친 정보요원은 신문을 중단하고 어디선가 녹음기를 가져와 틀었다. 그러자 테이프에서는 신문당한 자가 막 부정하고 있었던 그 전화통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래도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전화도청 덕택에 중앙정보부요원은 간단히 연행자로부터 실토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연행을 당했던 자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상임위원 이종목씨(당시는 상임간사). 그는 관계당국에 구속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화를 항의섞인 어투로 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중앙정보부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었다.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토품할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그려려니 짐작만 했는데 관계기관에서 도청을 틀림없이 하는구나 생각했죠.”

이씨는 그때 당한 이후부터 20여 년 동안 도청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도청은 해가 갈수록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화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설 청년학교와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 사무실 벽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형법(316조)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101조)도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자를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지닌 관계기관, 기업체, 심지어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도청기와 도청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청(盜聽)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정보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은 전화도청과 편지개봉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도청을 행해오고 있는가?

‘기술보안단’이라는 도청부대

도청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전화도청이다. 당국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안기부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안기부가 서울분실 안에 있는 ‘기술보안단’이라는 황색 5층 건물에 최신 도청장치를 갖추고 광범위한 도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평민당이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시인은 전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는 공권력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할 국민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 차원에 머무를 뿐이었다.

정작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앞의 평민당 발표시기를 전후해서 채영석(평민) 의원이 체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체신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체신부 산하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이 도청에 차출되어 있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맨투맨으로 직접 안기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요원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중앙전화국과 광화문우체국에는 관계기관의 도청장치인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전국 시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87년, 88년 도청대상자 명단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체신부 장관(오명)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이우재)은 위 질문들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오히려 그 답변은 전화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도중에 어렵지 않게 얻어졌다.

교환기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주인은?

전화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이 체신부의 도움을 얻어 전화국 안에서 도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 첫번째가 전자교환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교환기는 통화 요금의 전산처리를 위해 각 가입자별로 매 통화의 통화시작시간, 끝시간, 발신자·착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이 기록은 가입자의 요금 이의신청에 대비해 필요한 것으로 전기통신 법에 따라 외부유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외부인은 이 기록을 가로챈다. 즉 교환기 내에서 요금전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인 ① 중앙처리장치 → ② 자기 테이프기록장치 → ③ 요금전산소 가운데 ①과 ②사이에 이른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다(그림의 ①). 그래서 이 블랙박스에 요주의 인물의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그 인물이 어느 곳에 있는 누구와, 언제, 얼마간 통화했는지 알 수 있다(단 이 방식은 음성 자체를 도청할 수는 없어 뒤에 말할 두번째, 세번째 도청방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우재 전기통신공사 사장은 88년 국정감사에서 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전자교환기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전화국 직원은 그 블랙박스는 전화국 직원들 사이에 '데이터분석장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한다.

"그 장치의 재산관리는 우리 전화국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옮기거나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누가 무엇 때문에 전자교환기의 기능에 하등 필요없는 특수장치를 붙여

놓았는지 알지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기계식 전화기에는 효용이 없고 전자식 교환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화가입자는 약 1천50만 명인데 그중 80% 정도가 전자식교환기를 통해 통화가 되고 있다. 전자식 교환기는 대부분 국제전신전화회사(ITT)에서 만든 것을 수입한 것으로 ITT는 미 CIA가 타국의 통신분야에 침투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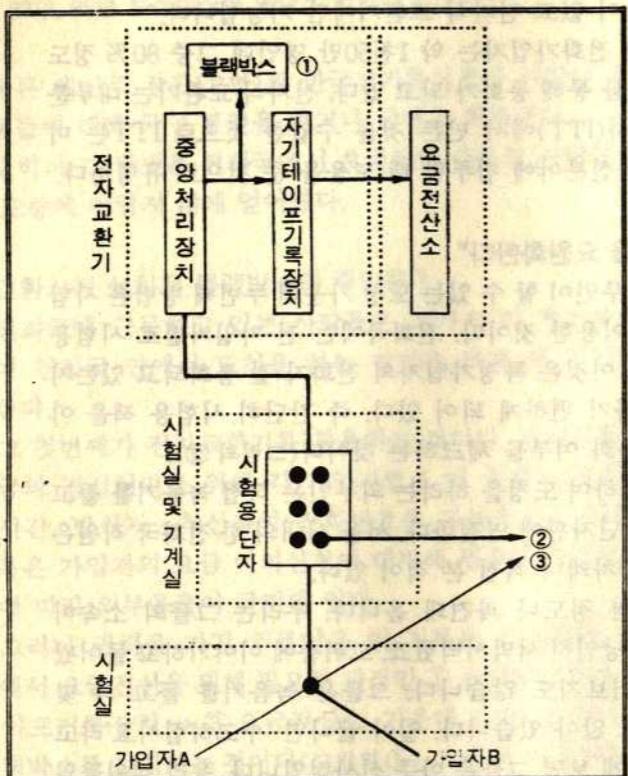
"전화국 직원을 요원화한다"

전화국에서 외부인이 할 수 있는 도청 가운데 두번째 방법은 시험용 단자판 등을 이용한 것이다. 전화국에는 전 가입자별로 시험용 단자판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가입자의 전화가 잘 통화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시험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즉 간단히 시험용 책을 이 단자판에 꽂아 통화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그림의 ②).

이 방법을 활용하여 도청을 하려는 외부인은 직접 녹음기를 들고 특정가입자의 단자판에 연결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전화국 직원은 이 외부인들을 수차례나 직접 본 적이 있다.

"어떨 때는 3명 정도나 파견돼 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니 당연히 서먹서먹했죠. 고위층에 이야기하고 들어왔겠거니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녹음기를 들고 와 몇 날 며칠을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수고하십시오'라고 나가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주 신사적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신세를 거의 지지 않습니다. 이용했던 선은 제자리로 해두고 담배꽁초 하나까지 청소하고 갑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직업의식의 발로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방법은 외부인이 직접 전화국으로 방문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세번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화국 직원을 포섭하여 전자시험실에서 특정가입자의 선을 특정 관계기관의 전용회선에 연결시켜 주게 하는 것이다(그림의 ③). 전화국의 전자시험실에는 관계기관으로 가는 빈 전용회선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면 관계기관원은 기관에 앉아서 필요한 가입자의 통화내용을 생생히 엿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통화자는 전혀 감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 결코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다.

관계기관에 포섭된 전화국원은 타의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채영석 평민당의원은 “단투맨으로 직접 안기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요원화한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급료의 일부를 안기부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전화국의 직원은 그러한 ‘비밀요원직원’이 직원간에 위화감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원인데 지휘체계와는 상관없이 움직일테니 위화감이 생기죠. 또 서로 누가 비밀요원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불신풍조도 생기구요. 그러나 그러한 비밀요원이 있다는 사실은 전화국 직원들 간에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워로부터

의혹받은 한 직원은 안기부장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또 서울시내의 직원은 한 전화국에서 10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돼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기부요원, 전기통신공사에서 기술습득

그렇다면 위의 외부인들은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체신부나 전화국에 쉽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힘있는 자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앞의 평민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안기부 요원들일 가능성성이 많다. 이 가능성을 더 짙게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안기부요원들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기술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 대전에는 전기통신공사의 연수원이 있다. 이곳에선 전기통신공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국방부·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외부기관(업체)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연수원에서 발행하는 ‘89년도 연수계획’의 외부위탁교육기관 항목에는 ‘세기문화사’라는 이름이 있어 관심을 끈다. 주지하다시피 세기문화사는 안기부의 위장회사인 것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세기문화사는 89년에 3명, 88년 11명, 86년 25명, 85년 27명을 이 연수원에서 교육시켰다. 이들은 대개 20일코스로 연수를 받았는데 과목은 시내·시외교환기술, 기계식 교환기술, 시내전송로 운용, 정보통신 등으로 도청시에도 유용한 기술들이다.

그런데 위 자료의 86년판에는 세기문화사 대신 직접 ‘안기부’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대전 연수원에서 세기문화사 직원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뭘하는 사람들인지 다 알았지요. 작년에 교육받으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화기술에 대해 교육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요. 대공업무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동안 한국정치가 공작정치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지금, 그들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안기부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현직 경찰간부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모경찰서의 한 간부는 <한겨레신문>의 한 기자가 “서울지하철노조지부 뚝섬역 도청을 관할경찰서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특정 지역에 도청을 하려면 시경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경의 재가가 나야 한다. 시경과 각 경찰서에는 통신계가 있는데 이 계통을 따라 도청작업이 집행된다. 안기부는 필요한 도청 가운데 A급에 속한 것만 맡아 한다.”

박종철 치사범 박처원, 도청팀장 지내
공권력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화도청을 시작한 것은 5·16 이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 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치안국 정보과에는 기존의 대공팀과는 별도로 ‘정보5계’를 신설, 전화감청을 전담한 것이다.

서울 남산의 외교구락부와 중국요리집인 동보성 사이의 대로변에 위치했던 이 감청반은 ‘○○ 공사’라는 위장간판을 달았다. 요원은 약 20여 명이었고 하루 2교대 또는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약 2백 회선의 전화를 도청했다.

이 감청반은 약칭 ‘AMD’라고 불려졌다. AMD의 팀장을 지낸 정보통 가운데는 박종철군 고문치사범인 박처원씨도 있다. 치안국 정보과에 근무했던 박문주(가명, 63)씨는 “AMD의 기능은 한일회담을 전후한 시점에서 가장 활발했으며 국내 정치인들의 상당수를 AMD가 감청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월간중앙>, 88. 9).

AMD는 중앙정보부가 생기면서 흡수될 때쯤에 8백 회선을 담당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한다.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로 변신할 때도 AMD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안기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시인했다는 5층짜리 황색건물의 기술보안단이라는 것도 AMD의 후신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듯 경륜을 갖춘 공권력의 도청은 그동안 이른바 ‘민주인사’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노무

현·이철·이해찬·강신옥 의원, 이부영·장기표·김근태·이신범씨 등은 도청피해를 직접 당해본 인사들이다.

서울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는 지난해 10월초 교단일로 홍콩에 가는 길에 중국을 다녀올까 했다. 아무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관에서는 귀신처럼 이를 알고 있었다. 박목사는 “아마 아내가 친구에게 전화 한 번 한 것을 기관에서 엿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탄압 수단으로 도청

청계천 3가 세운상가 일대 등 전자제품상가에는 4~5종의 도청기가 시판되고 있다. 도청이 공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화기 판매업소 등에 따르면 타인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는 크게 전화도청기와 무전기식 무선도청기로 나뉜다. 이 중 전화도청기는 다시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중에서 5만 원이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선방식 전화도청기는 소형 카세트녹음기마다 음성감지기(센서) 등 특수회로를 설치한 것으로 녹음기의 전선과 전화기의 전선을 연결해두면 자동적으로 전화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무선전화도청기는 ‘전자귀’라 불리는 일본제가 ‘경영자의 무기, 7가지 놀라운 기능’이란 선전 팜플렛과 함께 개당 13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것은 백 원짜리 동전 크기의 소형 마이크를 도청하고 싶은 전화기 몸체나 전화에 이어진 전선에 부착해두면 500m 이내 장소에서 FM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춰 들을 수 있다. 이때 FM라디오에 카세트녹음기를 연결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또 전화선이 아닌 벽이나 문틈에 부착시켜 놓고 실내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4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이러한 시중의 도청기는 가정 불화 때문에 상대편의 비행 증거를 잡으려는 중년부부들이나 채권채무관계로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들 이 사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구입이 두드러져 어떤 증권 회사는 한 번에 10개씩 사들였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노조감시와

지사·지점의 감독에 도청기를 즐겨 사용한다고 상인들은 말하고 있다.

일본계 무역회사 사원 정모씨(32)는 “전화감이 이상해 책상 밑을 살펴보니 성냥갑 같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며 외국기업체에서도 사내 도청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7월 7일 발견된 뚝섬역 역무지부 사무실의 도청사례는 도청이 노조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뚝섬역장 정선종씨는 서울시경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형사가 자신에게 찾아와 “지명수배중인 지하철노조 정숙이 여성부장을 검거해야겠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씨가 남편(뚝섬역 근무)과 통화할 것이 틀림 없으니 도청장치를 할 수 있도록 역장이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미국한테 못된 것만 배운다”

88년 국정감사 때 채영석의원은 체신부 장관에게 “도청이라고 하는 것, 미국 사람들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발전시키고 있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채의원의 지적대로 국내 도청기술은 미CIA에서 개발한 것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배운 만큼 또 그들에게 특특히 대가를 지불해 왔다. 나라의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미국에게 도청을 당해왔으니 말이다.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당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76년 미국에 갔다가 미국 하원의 친한파 의원이 그에게 “청와대가 도청당하고 있다. 청와대 내의 모든 사항이 보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박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래서 한때 박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청방지장치를 달기도 했으나 “미국 사람들이 도청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겠는가”하고 떼어버렸다(『월간조선』, 87. 7).

CIA의 기술자들은 CIA의 도청기술 개발을 위해 신종도청기의 개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IA의 기재과(TSD)에서 이를 담당한다. CIA 도청기술의 최종목표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의 정보조직을 예속시키는 일이다.

CIA 비밀공작부의 간부를 지낸 바 있는 빅터 마체티는 『CIA와 정보승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전화전신회사는 CIA의 표적이 되어 왔다. CIA 공작원들은 외무성이나 국방성 이외에도 당사국의 전신조직에 침투하려 한다. 이 작업은 때로 국제전신전화회사(ITT)의 도움을 받는다…… 일부 동맹국에서 CIA는 당사국 정보기관이 설치한 도청장치로부터 얻은 정보를 같이 쓰고 있다. 당사국 정보기관은 CIA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CIA가 침투할 수 있다.

CIA의 도청기술 개발과 미·소의 첨보전으로 도청기술은 이미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 예술의 첫번째 특징은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소형화이다. 이제까지 선보인 것 중 소형도청기의 대표적인 것은 서류철에 사용되는 핀의 머리 정도 크기. 약 1.5mm인 이 도청기를 전화선에 꽂아 놓으면 전화도청은 물론 방안의 모든 소리를 감지해낸다.

최근에는 레이저광선을 활용하는 도청기법도 나타났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사람의 대화가 공기에 압력을 가해 창문 등을 아주 미세하게 자극한다. 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창문에 직진성이 좋은 레이저광선은 조그마한 멀림에도 파형이 변형된다. 이 변형을 통해 사람의 대화내용을 알아내고 타자기 소리도 재생시켜 어떤 내용이 타이핑됐는지 알아낼 수 있다.

국내적인 사안으로서 유괴범이나 마약밀매 등 조직적 흉악범죄 집단을 검거하는 데 필요한 극히 일부분의 도청을 제외하고는 도덕성을 갖춘 도청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정치적 탄압을 위한 도청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 할 수 있는 도청방지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야단체 사무실에 도청기

노문연 천장서 발견

송신거리 6백m 최신형

두달 작동 가능

재야단체 사무실 천장에서 또 다시 고성능 무선도청장치가 발견됐다.

11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14 양평빌딩 201호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노문연·의장 김정환) 사무실 천장에서 노문연 사무국장 오기민(29)씨가 청소를 위해 천장 석면판을 뜯다가 천장 안쪽에 장치된 도청장치 송신기와 건전지를 발견했다.

오씨에 따르면 최근 사무실에서 심한 악취가 나 이날 천장 석면판 일부를 뜯어내고 손전등으로 천장 안쪽을 비춰보다가 창문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있던 송신기와 건전지 뭉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날 발견된 송신기는 10cm의 송신용 안테나 1개와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성동구 모진동 건국대앞 '인서점'(주인 심범석·46)에서 발견된 송신기와 똑같은 제품이다.

기름종이로 포장된 건전지 뭉치 안에는 1.5V 알카라인 건전지 10개가 직·병렬로 연결돼 1m 정도의 전선으로 송신기에 이어져 있었다.

이같은 송신기는 '인서점'의 경우에서처럼 1.5V 소형건전지 2개를 송신기 안에 내장할 경우 5일 정도 작동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이 보다 용량이 큰 건전지 10개를 직·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청기는 송신도달거리가 건물이 밀집한 시가지에서도 6백

여m에 이르는 최신형으로 70만 원대의 수입품이다.

지난해 2월말 이 건물에 입주,



11일 오후 노문연 회원 1명이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된 고성능 도청장치의 송신기와 건전지 뭉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송신기는 가스라이터 정도의 크기이며, 뭉치 안에는 10개의 건전지가 직·병렬로 연결돼 있었다. 〈진정영 기자〉

한 노문연은 연극·풍물·춤 등 8개 분회를 두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공연, 노동자교육 등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노문연측은 도청기 발견과 관련, "이는 노동운동과 민중문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정보기관 사찰의 일환"이라며 "12일 오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과 함께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89.4.12〉

공안기관 도청 합법화 추진

한겨레
90.9.26

민자 통신비밀 보호법

안보 빌미 자의적운영 규제 미흡 실내도청 금지안해 인권침해 방지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에 올린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도청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동안 공안당국이 임의 으로 해온 불법 도청을 합법화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기 위

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화감청을 못하게 돼 있다.

또 검열 또는 감청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안보기관 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전화도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안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의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과거에 인권침해라고 지탄이 되었던 정치인·재야인사 등에 대한 도청을 임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률안은 형벌 등에 규정된 중요한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소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는 먼저 도청을 실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물 검열을 배제하는 어떤 형태의 도청 또는 감청도 법으로 금지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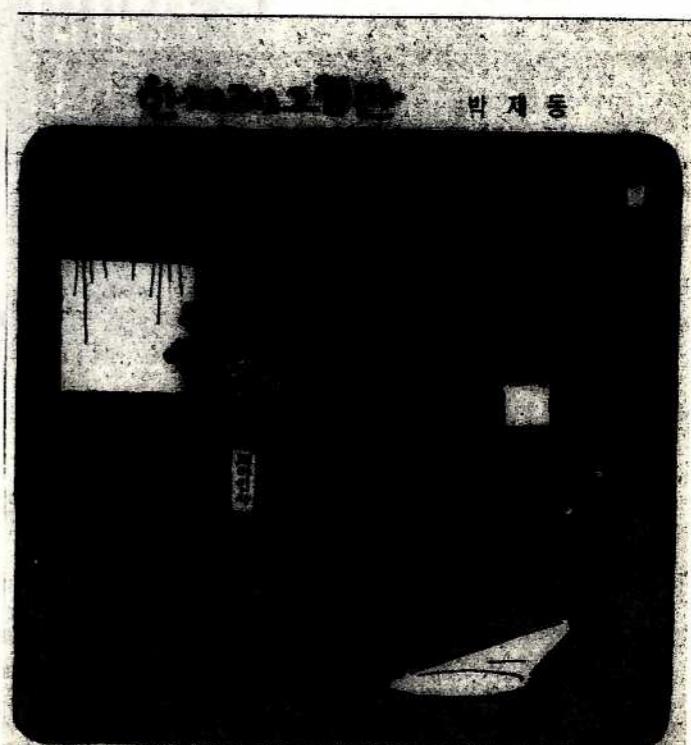
특히 이 법안에는 실내 대화내용을 엿듣는 실내도청 금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까닭에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을 무시한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재야단체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도청장비의 상당수는 실내 도청용으로 시중에서 10여만원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한 사무실에서 반경 30m~6백m 떨어진 곳에서도 사무실의 대화 내용을 모두 엿들을 수 있고 녹음기를 설치할 경우 녹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신전문가들은 "민자당이 이번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사실상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도청설비를 합법화해 재야인사 등에 대한 도청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정보기관들이 도청의혹을 받는 대규모 장비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서울시내 44개 전화국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돼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이를 장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장치로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청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현재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청장비를 일단 등록하고 국회가 위원한 전문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이를 장비의 운영실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동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법 제정 취지인 '국민의 통신 자유와 비밀 보호'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전화도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보관련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국가안보를 내세워 언제

든지 전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고 △전화도청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실내도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제정 입법취지를 크게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88년 12월 당시 민정당 이진우 의원 등 32명 공동명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성안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국

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현행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에 따르면 "전신업무취급국·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정밀통신역무 제공업자의 사업소에서 취급중에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전화도청자는 모두 처벌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허가면 모두 엿들을 수 있게 말썽 실내도청 단속 조항조차 없어

가안보와 관계있는 안보감청의 경우 처음 대통령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여론의 압력이 드세지자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 허가만 있으면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의 판단기준에 따라 안보관련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허가만 얻으면 국내외 인사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처럼 정치인·재·야인사 등에게 임의적으로 해온 불법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화도청에 대한 원칙적 규제도 기존 법률인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다

음기를 별도로 부착했던 것과 달리 이번 블랙박스시스템은 중앙시설인 TDX가 교환기에 부착된 미니 컴퓨터의 스크린에서 통화감시자의 번호·시각·상대방을 확인하면서 자기테이프나 디스크에 고속으로 담아 이를 선별 도청한다"고 주장해 공안당국에서 도청을 얼마나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내도청에 관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화도청의 경우 감청 대상자가 전화통화를 할 때만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지만 실내 도청의 경우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 지금까지 재야 민주단체 사무실에서 여러차례 발견된 도청 기의 대부분은 실내도

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서울 시내 44개 전화국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건,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 기술보안단의 대규모 도청과 서울지하철노조·인천 노동자대학 등에 설치된 전화도청기는 전화도청의 의혹이 짙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유아무야돼 왔다. 결국 법에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단속의지가 없으면 도청처벌 법조항은 사문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 전자상가·전자부품점에는 실내도청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이 점을 악용, 상대 기업체의 정보를 빼내거나 가정생활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도청기를 구입한다고 상인들은 말한다.

우체국서 봉함편지도 읽는다

체신부 우정연구소, 80여 곳 4백70명이 검열

'통신의 비밀보장'·'검열 불가피' 조화가 문제

체신부 직할기관으로 설립된 우정연구소(소장 사병권)가 우편물 검열업무를 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자료에서 확인됐다.

체신부의 국정감사자료 중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열허용 우편관서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편 검열은 우정연구소 소속공무원 4백72명이 맡아하고 있다.

지난 75년 임시우편단속법에 따라 '검열허용 우편관서'로 지정된 우정연구소는 서울중앙우체국 등 주요 우체국에 13개 '연구분소', 74개 '주재실'을 두고 여기에 검열관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를 검열관들은 육안 또는 광선투시기로 우편물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봉 검토한 뒤 해당기관에 통보해 왔다.

그동안 우편검열부는 안기부 등 관련기관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우정연

구소 이동선 관리과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우편검열문제가 거론되면서 과연근무나온 요원들이 전원 철수했다고 밝히고 "사무관급 이상을 제외한 일반 직원은 일단 연구소에 배속되면 계속 검열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검열에 매우 숙달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우편검열업무는 해방직후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어 큰 사회적 혼란을 빚자 48년 임시우편단속법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실시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지난 68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우정연구소를 체신부 직할기관으로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검열업무를 전담해왔다.

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개발'이었으므로 설치목적과 실제 기능이 달라, 지난 75년 체신부가 임시우편단속법 시행세칙을 새로 만

들어 우정연구소 소속 공무원이 우편검열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했었다. 시행세칙은 우편물 단속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우편물 △국시와 국헌에 위배되는 우편물 △공안 또는 양속을 해치는 우편물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송달제한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도착하는 우편물 등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열관이 배치되지 않은 우체국에 대해서는 우정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직원이 위해우편물을 골라내는 발췌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승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제되는 우편물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형법상의 '신서개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동호 기자>

<한겨레. p. 10. 8>

학원정보공작대 'CP'의 전모

정민주(자유기고)

학원사찰 규모 엄청나

지난 4월 28일 하오 4시, 부산 동아대생들은 총학생회 주최로 교내에서 「김세진·이재호열사 3주기 추모제」 행사를 마치고 교문 밖으로 진출했다. 때마침 진압경찰이 뒤늦게 도착했던 관계로 시위대 열은 하단로타리까지 진출, 천경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대치했다.

당시 시위대열 중 일부가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1백50여m 떨어진 경찰 CP(경찰상황실)를 덮쳤을 때, 사복경찰 8명이 서류보따리를 들고 뒷담을 넘어 달아나고 있었다. 부산 여고 입구 주택가에 일반가정집으로 위장한 이 CP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정보사찰망의 본거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상당수의 동아대생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사복경찰들이 훌리고 간 서류다발과 시위체중용 1천미리 카메라를 찾고 학교로 돌아갔고 달아나는 사복경찰을 끈질기게 추적한 학생들은 그중 한명을 불잡아 총학생회 사무실로 데려간 뒤 조사했다. 밝혀진 신분이 국가안전기획부 부산분실 정보사무관(사하구 담당관) 안동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쓴 진술서·각서·신상기록을 보면 안사무관은 안기부 부산사하구 담당관으로 구청·경찰서 등과 연계 구내(區內)

불순분자에 대한 내사를 해왔는데 이날 동아대 시위관계로 부산 서부 경찰서 정보과장과 만나기 위해 CP를 방문했다가 잡혔다고 적혀 있다. 또 그는 동아대 승학캠퍼스 CP가 "서부경찰서 관할구역으로 동아대 생들이 시위를 벌일 경우 동태를 파악·보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원이 7~8명쯤 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안사무관의 진술을 CP에서 발견된 관계자료와 비교해 보면 CP의 역할이나 근무인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 볼 때 CP에서 안사무관이 잡힌 것은 경찰·안기부의 공조를 통한 공안합수부의 학원정보공작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실례를 보인다.

"CP에서 입수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복경찰이 훌린 것만을 주운 것인데, 그들이 가져간 중요자료들을 보면 학원사찰규모는 엄청날 것입니다."

당시 CP습격에 가담했던 한 학생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CP에서 입수한 35종의 각종 자료를 살펴면 이들의 감시 내용이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고 치밀함을 알 수 있다. 또 감시대상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아대 교수, 보직교수, 교직원들의 상황실태는 물

론, 현 신순기총장의 뒷조사까지 철저히 하고 있을 정도이다.

CP에서 발견된 학원사찰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989년 3월, 서부경찰서 정보과 학원반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동아대현황」이라는 두툼한 비닐파일이다. 보고순서로 ▲동아대 CP현황 ▲동아대현황 ▲방학중 및 89년도 1학기 예상문제 및 전망 ▲경력(경찰력)대비현황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CP구성·역할 등을 뒤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정보채집 규모에 대해 살펴보자.

조사대상으로는 앞서 말한대로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동아대 의학부·대학원의 교수, 보직교수,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동아대현황」을 보면 동아대의 학부·대학원의 학생, 교수, 보직교수 현황이 기록되어 있고 교수협의회(88년 11월 2일 발족, 회장: 이대규 정외과교수)와 동아대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주)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캠퍼스별 도서관 이용 현황, 등교수(평상시와 방학시) 현황이 기록되어 있고, 총학생회·총여학생회·대의원회·서클연합회·인권복지회 등 학생간부의 명단과 현황, 동아대 내 문제학생의 명단이 파악되어 있었다.

문제학생은 민민계열 11명, 자민

당국의 학원정보공작의 실체가 밝혀짐으로써 현정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가의 광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던 학내 정보사찰의 전위초소인 CP(경찰상황실)가 학생들에 의해 피습, CP 내에 있던 학원 정보공작에 관한 서류가 입수되면서 당국이 그간 부인했던 학원사찰이 6공 출범 이후 계속된 것으로 마침내 드러났다.

특히 학원사찰문제는 노정권 출범과 함께 당국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부정해왔던 것인 만큼, 이번 「동아대CP사건」은 그간 학원자율화에 관련된 당국의 발표 일체가 허위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계열 10명, 학원사태관련 제적 복학생 6명, 기타학생 7명으로 분류해 놓고, 민민계열에 대해서는 '반제·반파소민족민주운동연합', 자민계열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좌경세력'이라는 보충설명을 달아놓았다.

총장까지도 뒷조사해

이와 함께 동아대 문제학생현황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학원가의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것인데, 문제학생들은 A, B, C 3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88년의 경우 A급3명, B급12명, C급3명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89년동아대 문제학생현황(89. 3. 20)」에는 금년에 시위상황이 늘 것을 예상해서인지 A급이 10명, B급이 16명, C급 24명으로 각기 급증하고 있다. 총학생회 간부진의 전부가 들어가 있는데, 분류, 성명, 학과,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태전력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89년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백기승(행정·4)의 경우 A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사태전력난에는 '89총학생회장·88학년도 교내외 위적극가담 및 89년학년도 교내외 시위주도'로 기재되어 있다. B급인 김종희(무역·4)는 사태전력난에



1학기 내의 예상문제집과 전망 등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학원소요상황 일지.

'89총학총무처장, 88교내외 시위주도 적극 가담'이라고 적혀 있다.

대단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이다. 88년 동아대조통위(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교류성사 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였던 김종보(전자·4, 휴학)와 현 총학생회장인 백기승이 특별관리대상자이다. 현재 구속중인 김종보의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과 지도교수명(변근식·전자과교수), 구속 전 동향 등이 약 44쪽에 걸쳐 짜짜하게 적혀 있다.

또 이 자료는 동아대생들의 학생 단체 가입·결성 등을 조사한 '동아

대 자체 또는 지역전국 단위의 학생 단체 결성, 연합체가입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4월 14일 발족한 「노태우 완전퇴진을 위한 민족동아투쟁본부 건설준비위원회」(대표 백기승 총학생회장)의 경우 ▲노태우정권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이 투쟁목표로 기재되어 있었고, 참가단체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을 비롯하여 한두레 등 서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대학언론으로 말해지는 대학신문, 방송국, 영자신문의 제작자명단, 현황이 2년간에 걸쳐 상세하게 적혀

있으며 별도로 '민족운동대학생총연합' (전민련)과 관련된 서클현황'이라는 양식에 따라 전통예술연구회 (회장 김진열·경영2) 등 10개 서클이 ▲농악서클 ▲종교서클 ▲향토문화 연구서클 등 3군으로 나누어 집중감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실소개 하는 것은 소위 '새마음회원카드'다. 총학생회간부를 비롯한 학회회장 이상의 학생간부 2백50명이 자신도 모르는 새 '새마음회'의 회원이 된 것이다. 일반 이어서 양식 이상으로 항목이 세분화된 '새마음회원카드'에는 학생자치 기구 간부들의 모든 신상내역들이 기입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학원사찰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한 동아대생에 따르면 '새마음회원카드'에 붙어 있는 사진이 자신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한 학적부 사진이 분명하며, 신상내역이 학적부와 일치된 것으로 미루어 봐 학생과 카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한 총학생회 간부는 '새마음회원' 카드 철 앞면에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을 벗겼더니, 학생과장 글자가 보였다고 증언했다.

총장에 대한 뒷조사는 정보사찰이 한마디로 잘 데까지 간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CP에서 발견된 자료 중에는 신순기 현동아대총장의 인물존안카드와 '동아대신임총장(신순기)동향'이라는 서류가 있다. 정리해 보면 동향란에 눈신총장이 지난해 12월22일 하오 4시 30분~5시10분에 동아대승학캠퍼스 교수회관 5층 강당에서 총장직에 당선된 사실과 인적사항을 비롯, 학력·경력이 열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현 총장(정수봉)과 속함'이라는 신총장의 성향이 적혀 있다. 또 인물존안카드에는 경력·재산 외에 배후인물, 성질 및 소행, 주의



승학CP는 학생들의 둘을 맞아 유리창이 모두 파괴된 상태다.

사상(자유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태도(지지)가 조사·파악되어 있다.

「89년 예상 문제점 및 전망」

'동아대현황' 바인더에서 발견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섬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89년 1학기예상문제점 및 전망」이다. 1학기 학사일정과 함께 학내외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예상문제들을 분석해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학내의 경우 이를테면 총장인선 후 예상되는 보직교수 및 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 총학생회가 족벌·파벌·어용·무능교수의 퇴진과 학교재단분리 의혹 해소 요구를 하게 되고,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 간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고, 학외측면에서는 연지동 하야리아 미군부대 부지반환에 관련된 반미투쟁, 전민련 결성으로 인한 '교내예속단체' 결성문제의 제기, 농민소득과 관련된 정

전농련 연체 투쟁이 벌어질 것 등 구체적이며 정확한 예상문제를 제기, 이에 대한 전망·분석과 대응방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CP에서 발견된 자료 가운데 「전망철」(展望報)은 이들 CP요원들 정보활동의 고도성을 짐작케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 2시간 단위별 평균 교내체재 학생수와 하오 8시 이후 도서관 잔류 학생수가 10명단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망철」의 속표지 안쪽에는 CP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수산대, 외국어대, 고신대, 교대, 인제대, 해양대, 부산여대)의 명단과 각 경찰서의 자동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또 다른 곳에는 각 대학 CP의 전화번호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테면 부산여대 863-2770, 동의대 805-4459 등. 「전망철」의 성격은 행사 및 시위 등에 대한 사전첩보를 '망원'(網観)이나 '프락치' 등을 통해 입수, 전망함으로써 진압 등 일련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정



부산여고 뒷산으로 빠지는 CP의 통신선. 이곳에서 본서 상황실을 거쳐 도경지형실로 상황보고가 이루어진다.

(국문·3, 대의원회 기획부장)이 사회를 봤으며, 하오 2시 사회대 상임 위원인 류성기(경제·3)의 고별사가 요약 기재되어 있고 하오 2시20분 32대 대의원회 의장 김금수(철학·3)의 대의원회 출범사, 하오 3시25분에 있었던 김중기(전 조통위 위원장)의 강연(연제: 현단계민주화운동과 통일의 과제) 내용 등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4월28일 CP피습으로 학생들에게 입수되기 직전인 4월 25일 「동아대 이경현 살인폭력진압 및 민족민주운동탄압 규탄대회」 행사까지 상세하게 시간별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 「동아대 CP현황」

그러면 이처럼 학원 내에 침투해 주도면밀하고 완벽한 정보사찰업무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CP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미 파악된 것으로 지난해 6월 인하대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정보과 이상철(24)의 경이 학내에서 학원 정보를 수집하다 학생들에게 불들린 「이의경사건」의 예가 있다. 이때 평민당은 신순범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중부경찰서로 파견,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는 143회 임시국회에서 내무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신의원은 "6월17일 인천 중부경찰서 서장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원진압대책의 하나로 특수망 7개(교내침투)와 협조망 7개(교내침투) 등 기성정보망을 운영하고, 전경출신복학생과 학교간부급 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6.29 이후에도 학원정치사찰망을 간첩망처럼 운용해 온 이유와, 언제 이를 지시했는지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보성 자료인 만큼 철저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별 등교예상인원, 행사일시 및 장소, 행사명, 참가인원, 행사 내용이 사전에 망원 등을 통해 입수·기록된다.

89년 1월5일자 작성일로 기록된 「전망철」은 이미 6월21일까지의 행

사스케줄이 예상된 상태다. 이를테면 2월10일 실시되는 동아대 노조단체협약에 학교측에서 부총장 등 7명, 노조측에서 김성주 위원장 등 7명이 참석, 급양비인상·주5일제근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일자인 1월5일에 이미 예측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2월28일~3월1일 사이에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교수간 친선도모 및 쟁성일교수 송별식을 결한 체육대교수 단합대회가 열리고, 19명이 참석할 것이라 사설이 사전에 미리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총괄전망 외에 주간전망도 전망 철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간전망을 살펴보면 총장취임식, 신입생입학식, 동아리연합회 등 서클행사, 각 학과별 체육대회, 심지어는 의대 김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춘구내무장관은 "정보망 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는 인천 중부경찰서장도 학생들에게 "경찰의 학내사찰은 오래 전에 없어졌다"고 말한 것과 제를 같아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번 동아대 승학캠퍼스 CP에서 발견된 「동아대현황」 바인더에 기재된 「동아대CP현황」과 CP 요원의 근무기록, 신상기록카드는 CP를 통해 학생동태를 비롯한 학원 정보사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동아대CP현황」에 따르면 동아대CP의 위치는 2개소다. 이중 승학캠퍼스CP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7-2번지 소재 총 30평짜리 2층 슬라브 건물로 지난 4월28일 동아대생들에게 피습당한 곳이다. 구덕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CP는 서구 서대신3가동 산2번지 소재의 대신공원관리사무소 참고다.

승학캠퍼스CP는 지난 6월 11일 필자가 방문한 바 있는데, 20일 전에 사무실 짐기들이 철수하고 현재는 인근주민이 입주,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학생들로부터 들세례를 받아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다. 외부는 일반주택으로 위장되었으며, 내부구조는 1층이 20평으로 대형사무실 1개, 숙직실 2개, 화장실 그리고 2층은 10평 규모로 사무실 2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있다. 인근주민에 따르면 지난 85년에 신축되었으며 내부구조로 볼 때 정보사찰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다는 것. 건물뒤편으로 굽은 통신선이 부산여고쪽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개의 파출소 구조와 거의 흡사해 보였다. 현재는 동아대 ROTC의 등교시 집합장소로 쓰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만 봐도 이들은 평상시 교내에 침투하여 정보망을 통해 첨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실례로 이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망원이나 학교측과 접촉, 학생동향 등 학원관련 정보를 입수한 사실

구덕캠퍼스 CP로 쓰였던 대신공원관리사무소창고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살펴 볼 수 없었으나, 현재도 CP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경찰들의 상황일지

CP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1/16명. 팀장인 서부경찰서정보과 이모경위를 비롯한 정보과학원반소속 A요원들이 1/13명, C요원(의경)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승학캠퍼스 CP에서는 A요원이 1/8, C요원(의경)이 2명으로 1/10명, 구덕의 경우는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승학·구덕 공히 주간근무(상오 8시~하오 6시)는 전원이 근무하고 야간(하오 6시~10시)에는 승학 1/5명, 구덕 3명, 하오 10시 이후부터는 승학에서 3명, 구덕에서 2명이 숙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 발생시는 전원 24시간 근무체제로 들어간다.

이들은 평상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 승학CP의 경우 CP 소내 근무 1/2명, 정문 2명, 순찰1선 2명, 순찰2선 2명, 그리고 정보활동이 2명, 구덕은 CP 1명, 정문 1명, 후문 1명, 순찰1선 1명 정보활동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근무자의 경우 「문제학생 등교여부 확인, 교내 대자보·유인물 입수, 교내학생들의 동향 파악」, 순찰은 「인쇄소나 복사집 다방 등 첨보수집」, 정보활동은 「망원접촉 등 첨보수집—시위·행사 등 동향」 등이 근무요령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은 평상시 교내에 침투하여 정보망을 통해 첨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실례로 이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망원이나 학교측과 접촉, 학생동향 등 학원관련 정보를 입수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일자 미상의 근무일지(근무자의 서명이 모두 되어 있다) 08:00~20:00 사이에 근무한 최모 순경은 '학교측과 협조하여 교내동향 파악함' '망 첨검함' 등을 기재해 놓았으며, 다른 날 08:00~20:00 사이에 '대기·소내·망접촉'이라는 요목과 함께, '20:00경 서구 하단동 명동다방에서 망원 00248호를 접촉, 첨보청취함'이라고 적었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김모순경은 '하단동 에덴다방에서 망원 00285와 접촉 중간고사 실시 및 익일중간고사 실시 사항에 대해 파악함'으로 적어놓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근무일지에서만도 망원의 수가 수도 없었다. 00-285, 00286, 00287, 00368, 00265, 00269, 00267, 00248, 00249 등. 주로 이들이 자주사용하는 다방은 대학 근처인 보방카페, 멕시코다방, 하구언다방이다. 이들은 '학생과의 연락유지' '학교측과 접촉'에 의해서도 학내정보를 수집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CP요원과 학생과는 정보수집에 있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대 총학생회 홍보부장 황영선(사학·4)의 말에 따르면 지난 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의면적으로는 상주경찰이 대학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경찰의 학내정보사찰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공공연히 전화도 청까지 되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학생처 장학과의 협조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그는 결정적증거는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87년 2학기 중에 학생처 장학과 직원들과 야유회를 함께 가질 정도의 밀착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고려대의 경우도 CP가 정문 앞의 '안개'라는 카페에 있는데 평상시 4~5명의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정보과 형사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원사찰, 전국적으로 행해져

상황이 발생하면 CP의 근무위치가 바뀌게 된다. 승학CP의 경우 CP 내에 1/2명(구덕은 1명)이 「상황접수유지와 보고, 통보·하달·학교협조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문에 2명(구덕은 1명)이 배치되어 교내에 침투되어 있는 망원접촉과 정문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속칭 '비둘기조'로 불리는 학원침투조로 부산여고 뒷산 거점(구덕은 경남고 뒷산)에 투입된 2명은 교내운동장에 들어가 동향파악을 하게 되며, 1천미리·3백미리카메라를 각 1대씩(구덕은 3백미리 1대) 휴대하고 있는 채증팀은 거점지역이나 정문 앞에서 시위상황이나 시위주모자의 사진을 찍어 추후 사법처리시 증거물로 제시한다.

이와같은 CP요원들의 활동상황은 근무편성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CP가 급습당하기 바로 전 일인 27일 근무기록을 보면 날씨난에는 청(晴)으로 적혀 있고, 감독자 난에는 이모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의 서명은 보이지 않는다(4월19일자에서는 서명이 보이는데 결재가 밀린듯하다). 근무시간·장소별로 조별편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근무자명단에 CP요원각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날 상오8시~10시 사이에 김모경장·임모경장조가

CP 내 근무를 했고 전모순경·김모순경조는 정문, 박모순경·이모경장조가 후문, 최모순경·제모의경조가

순찰1선, 대기근무자로는 이모순경·최모의경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학내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는 비상체제로 돌입한다. 직접 서부서 정보과장이 나와서 CP요원을 진두지휘하고, 차량·중카메라·

우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 이 사실은 당일의 직원근무배치표가 설명하고 있다.

CP에 2명, 거점인 부산여고에 2명, 후문에 1명과 채증팀(3백미리카메라) 2명, 하단로타리에 2명, 명지삼거리에 2명이 배치되고 선두에서 주임(CP장 이경위를 가리키는 듯함)과 경장1명이 상황을 유지하고 채증팀 1명이 활동하고 서부경찰서 정보과장과 경찰 1명이 총괄지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원근무배치표 아래 끝에는 ▲ 지원경력 169중대 ▲ 시위용품 은닉여부-현지답사수색이 적혀 있고, ※ 표시로 169중대 5소대에서 5,6명씩을 하단·을숙도·명지로타리에 사복배치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동아대CP현황」에는 또 학생시위 진출시 분별, 단계별로 경력배치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있었고, 정보사찰망이 전국단위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승학캠퍼스 유무선망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거점·정문·후문·미행요원으로부터의 정보 및 상황이 승학CP에 유선·무선망(승학당)으로 전달되면 CP로부터 경찰서상황실→경찰국 지령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학원정보사찰이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서 말한 인하대의 경우 외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심원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 내 정보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지역주민으로부터 입수하고, 10월7일~8일 사이에 광주직할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제보의 내용은 전남대 앞 신안동 삼익아파트 2동 1403호(북부서관할)에 전남대 담당 CP가 있는데, 지난 84년 이후 정보사찰요원 20여명이 이 곳을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대 앞 서석동 서석아파트 503호(동부경찰서 관할)도

조선대CP로 사용, 3~4년 전부터 10여명이 봉고차(광주 5가 9116호)까지 대기해 놓고 있을 정도며,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밤낮없는 내왕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한 점 등 사생활침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비서관과 광주시 총무과 최남신씨(행정주사)를 동행,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당시 전남도 경국장이었던 남상용씨에게 학원정보사찰 여부를 질의했더니 처음에는 84년 학원자율화 이후 일체 학원사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함에 따라 위증으로 정식고발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남국장은 사과와 함께 전남대·조선대 부근에 학원거점을 운용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학원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만 학교동정파악 등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만약 거점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소용 없는 자료는 돌려주기도

그러나 「동아대CP현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교 내외 할 것 없이 학생에서부터 총장에 이르기까지 감시와 정보수집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현정권은 학원 감시탄압이 없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심지어는 총장까지 조직·체계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로써 동아대 하나만이 아니라 전·대학이 감시·관리대상이 되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것은 민주화세력에 대한 대탄압입니다."

동아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김종봉군(환경공·4)은 현정권의 정

보사찰이 명백히 드러난 「동아대CP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뒤이어 발생한 「동의대사건」 때문이라 고 밝힌다.

한편 동아대 승학CP를 급습, 학원정보사찰자료 및 안기부 안사무관을 학생들이 총학생회사무실로 불들어 간 뒤 서부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이 "자료·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치고 들어오겠다고 말했다는 것. 그래서 동아대생들은 무장규찰대 50명을 교문 앞에 집중배치했는데, 이 때 경찰간부들이 하단2파출소(경비CP)로 집결하고 전경3천여명이 출동했다고 한 동아대생은 전한다.

총학생회는 안기부 안사무관을 불잡은지 4시간 뒤에 풀어주고 자료를 선별, 복사한 뒤 초용없는 것들을 돌려줬다.

"자료 돌려주길 잘했다는 보직 교수도 있었습니다. 타깃이 동아대였는데 자료를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치고 들어온 명분을 줘 동의대가 아닌 동아대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사회대 부회장 김철홍군(사회·3)의 이야기다.

“CP 통한 학원사찰 중지돼야”

「동아대CP사건」 발생 다음날인

4월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관련기사 중 서부경찰서장의 "학생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발언이 실렸다. CP 발견 자료 중 CP요원들의 근무일지나 신상기록카드를 살펴보면 학생처 학생과, 단과대 학생과 직원들의 협조 속에 CP요원들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5월4일 단행된 동아대 교직원의 대폭적인 인사 조치 및 학생과의 폐지가 학생과 직원의 정보사찰 협조를 시사하고 있다. 또 실제로

일부서류의 양식이 학생과 내의 것과 CP 내의 서류와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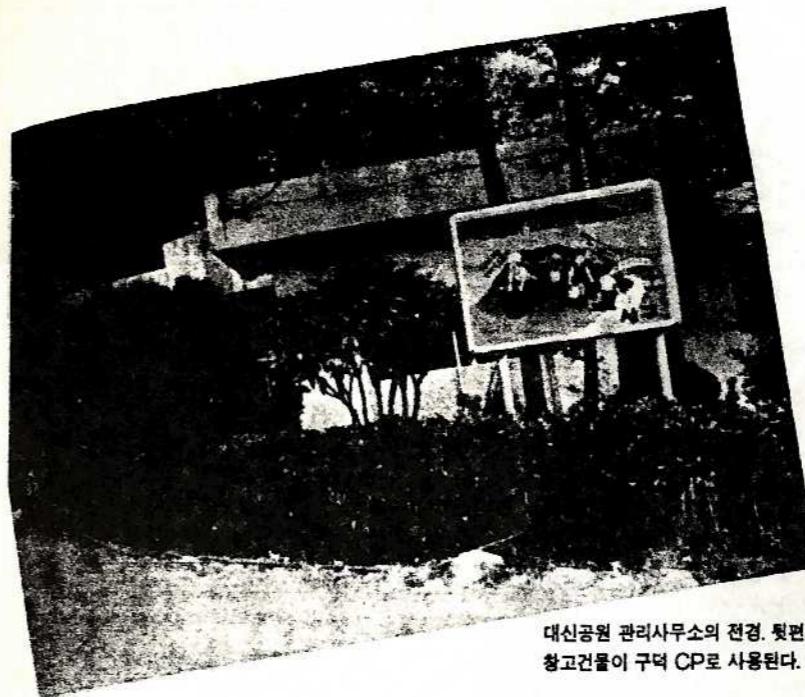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서장의 "CP의 대부분의 자료를 학교직원을 통해 얻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동아대CP현황」을 통해 교내에 정보망을 유지, 망원과의 접촉에 의해 정보입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CP요원들 신상카드의 신상상담 일지 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요원이 있어 학생뿐 아니라 교수·교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승학CP」에서 발견된 자료 중에는 승학캠퍼스 도서관건물의 1, 2층 도면이다. 도서관 1층에는 동아대 일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전산실이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밧줄이용 내려갈 수 있음(전산실 발코니) 높이 3m", '전산실복도·햇빛구멍(8개) ※위구멍으로 전산실 복도에 내려갈 수 있음(파괴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CP가 도서관 내 도면을 입수하고 있고 또 전산실에 땅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적혀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도 바로 '언제나 학교 내의 모든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총학생회 간부들은 풀이하고 있다.

신순기 동아대총장은 지난 5월13일 교직원에게 공한을 발송했다. 신총장은 공한에서 학원사찰문제에 대한 학교의 입장 및 조치를 지난 5월4일에 담화문으로 발표하고, '대학의 자유와 자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계당국의 대응방식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또 학생과의 폐지와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 조치 및 학생과의 폐지가 학생과 직원의 정보사찰 부로 유출된 데 대한 총학생회측의



대신공원 관리사무소의 전경. 뒷편 황고건물이 구역 CP로 사용된다.

관련자 중징계 요구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취하고 앞으로 불법적으로 학내관계자료가 유출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승 동아대총학생회장은 "경찰·안기부 등 학원사찰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대학구 성원 전반에 대한 감시와 '호교학생' 육성으로 캠퍼스를 학생과 학생의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는 현정권의 비열한 작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총학생회·총장·교수협의회에서 서부경찰서장에게 공식적인 사과해명과 대학 CP의 해체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제2차 서부서장계투쟁을 전개, 학원 탄압 중지와 수배자해제를 촉구할 뜻을表했다.

이대규 현교수협의회의장(정외과 교수)은 『대학의 본질이 연구와 교육에 있는 만큼 대학의 자율화와 자

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5공의 잔재인 CP를 통한 대학사찰이 중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자치·자율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미국에서 1년 전에 귀국한 뒤 학원사찰·탄압이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CP가 학교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서부경찰서장의 "학생처로부터 정보제공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대학측에서 스스로 중요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적하고 그것은 경찰측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 책임을 돌리는 경찰측의 발언은 "학생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원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을 학문 공동체로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데, CP를 이용해서 대학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덧붙였다.

말

이땅에 군부독재문화가 시작된 이래 온갖 명분으로 학원정보공작에 의한 학원탄압은 줄곧 계속되었다.

5.16 이후 9개 종합대학과 37개 단과대학, 그리고 각 지방대학 학내에까지 침투, 학원탄압을 위한 조직적 학원사찰의 본거지였던 YTP (Young Thought party), 박정희 유신독재 치하의 중앙정보부·경찰의 학원공작, 보안사가 종횡무진으로 칼을 휘둘렀던 전두환시대의 녹화사업과 학원프락치. 뿐만 아니라 지금도 CP가 5공시대와 다름없이 정보정치의 일선에 서서 학원사찰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무이전 공무소이전 법률적 근거로 마련된 기관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문교부 내의 교원정보부라거나 비밀경찰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체널은 사라져야 합니다.

비밀체널이 존재할 경우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며 국정을 혼란 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공개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신문, 여론 등의 통제·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변호사는 또 이번 동아대CP사건과 관련, "대학이 면책·특권지역은 아니지만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장소인데 비밀·불법적인 CP를 운용한 것은 정면으로 사상과학문의 자유를 유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동아대CP에서 발견된 자료를 볼 때 프락치·망원 등을 통해 불법사찰·비밀공작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로서 이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현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군단 프락치활동 지침서

90년 1월 <말>기



ROTC생도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자사하는 「학원안정 지원방안」이라는 비밀문서.
본지는 학생중앙군사훈련학교에서 작성된 대학 학군단에 대포로 실시되고 있는 이 문서를 극비입수해 전재한다.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비밀지침서

학도군사훈련단(ROTC)이 대학 내 학군단 생도를 활용, 학생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학원안정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본지가 입수한 학생중앙군사학교(일명 문무대)에서 작성한 「학원안정지원방안」이라는 비밀지침을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총 11쪽에 달하는 문제의 이 문서는 문무대가 작성, 각 대학학군단에 시달한 것. 현재 각 학교에서는 이 문서대로 이른바 '학원안정지원' 활동이 시행되고 있다. 본지는 문무대의 학원담당을 맡고 있는 김 아무개 소령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김소령은 인터뷰에서 "저희 문무대에서 작성한 것이고 이미 각 학군단에서 이 방침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학원안정지원은 학원안정지원 여건조성과 안보교육지원 활동전개 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학원안정지원 여건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ROTC 후보생 및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무대는 "대학가의 좌경의식화가 확산되어 국가경제와 안보태세가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제, "학원안정지원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기 위해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극우적인 현실인식에 토대를 두고 ROTC생도·RNTC생도·명예 ROTC생도, 대학직장예비군, ROTC 지원학생, 군장학생, 공직자자녀, 위탁장교, 건전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른바 '건전활동'을 비밀리에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세계, 교직원세미나 및 길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직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학당국의 각종 행사에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대학과 학원문제해결의 동반자적인 일체감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안보교육지원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용요소 전인원과 일반대학생 회망자를 대학당국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전방땅굴지역 사단 및

통일 전망대를 견학시킨다.

둘째, 학군단 전간부 및 위탁장교를 대상으로 출신고등학교 동문회 등에 참석, 식사 및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학원안정활동을 벌인다.

세째, 단장과 교수부장이 2개 이상의 써클모임에 참석, 써클활동에 자연스러운 접촉 및 대화를 한다.

네째, ROTC 후보생·군장학생·명예 ROTC생 등에게 ▲일반대학생과 유대를 강화, ▲대학내전 써클에 분산가입, ▲써클내에 간



학생군사훈련단 마크

부직 임무를 수행케 한다. 이를 통해 '의식화' 써클과 '건전' 써클 현황 및 활동내용을 보고, 분석하는 회의를 실시한다.

다섯째, 매 분기 1회씩 대학캠퍼스내에 각 상황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 '건전' 학생명의로 배포 및 살포한다.

여섯째, 건전학생의 총학생회 및 써클장으로서의 진출을 지원한다.

이중 네번째와 다섯번째 사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프락치의 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학원안정지원방안

학생중앙군사학교

1. 배경

a) 사회혼란의 요인

- 최근 대학가의 좌경의식(소수학생의 주도)
- 국내 민주화진행 과도기에 편승, 체제전복 기도
-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에 동조

b) 국가 안보태세 최대위협 직면

- 북괴 대남 적화통일 야욕증대
- 국가경제, 사회혼란 초래

c) 물벼른 사국관 살실

- 좌의세력의 구호
- 일부 정치인 및 제야인의 잘못된 언동

d) 안보의식 교육확산 필요

- 안보의식이 희박한 전후세대

"학원안정은 절대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추진

2. 목적 및 지침

가) 목적

- 대학내 학군단 가용요소를 활용, 학원에서 각종 학원안정 지원활동을 활성화하여 대학 전후세대들에게 국가안보 중요성을 인식케 함

나) 지침

- 가용요소 최대한 활용
- 학원안정 지원여건 조성
- 안보교육 지원활동 전개
- 전전캠페인 전개

다) 가용요소

- ROTC RNTC

● 대학직장 예비군

● ROTC 지원학생

● 군 장학생

● 공직자 자녀

● 위탁장교

● 건전학생

3. 학원안정지원방안

가) 학원안정지원 여건조성

1) 건전조직 구성

- ROTC 후보생, 명예 ROTC 후보생, ROTC 지원학생 예비역학생, 위탁생, 군장학생, 공직자 자녀

2) 가용 요소 자기 신념화

- 안보 이념교육
- 친목 유대 강화
- 안보세미나 및 간담회

3) 교직원과 유대강화

- 교직원 세미나 참가 / 길흉사 적극 참여
- 체육활동 / 등산 등을 통한 친목 도모
- 지역, 혈연, 학연, 종교 활동 등 유대 강화

4) 대학과 일체감 조성

- 학원문제 해결의 동반자 역할
- 야외 연수 / 세미나 참가
- 군 관계 업무 적극 지원
- 각종 행사 초청 및 지원

5) 안보교육 지원활동 전개

- 전전유인물, 플래카드 게시
- 전전캠페인 전개
- 전방땅굴, 전적지 견학
- 학무제 행사 활성화
- 안보세미나, 간담회
- 전전써클활동 적극 참가 · 지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지시한 '1인 1씨를 갖기 운동'은 그 목적이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써클의 현황과 활동내용 등 학원동 태漏 파악하고, 아울러 써클내에서 간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써클을 비운동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섯 번째의 활동내용도 그동안 대학 내에서 꾸준히 발견된 학생운동을 비하는 정체불명의 유인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울러 여섯번째의 사실은 최근 몇년동안 대학교총학생회선거기간 중 '군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후원을 받는 후보가 있다'고 나돌던 소문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무대의 이러한 '학원안정지원 활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 해주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중앙대학교의 ROTC생도인 이아무개군이 익명을 요구하면서 프락치 활동을 해왔음을 고백해 온 것. '이군은 "학군단의 협조를 얻었다"고 밝힌 두명의 보안대 요원이 찾아와 '국가안보'를 위해 협조할 것을 강요 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군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는 이군이 속한 학과의 학생운동권 동향을 캐물었으며 아울러 그들은 이군에게 각 과별로 ROTC 생도들을 한명씩 접촉하고 있음을 귀띔해주었다고 이 군은 증언했다.

이상의 사실로 미뤄볼 때 학군단을 통한 문무대의 '학원안정지원 활동'은 '학원프락치 활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동시에 이것은 보안사 등 정보기관의 학원사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명예R.O.T.C 군부대 일일입교
- 예비군 조직관리의 활성화
- 안보교육 지원

4. 학원안정 세부추진방안

가) 진전조직구성

1) 대상

- R.O.T.C 후보생, 명예 R.O.T.C 후보생, R.O.T.C 지원후보생, 예비역 학생, 위탁장교, 군장학생, 공직자 자녀

2) 선발관리: 연중 계속

- 학군단장 직접 선발, 후견인적 유대관계
- 각종혜택 우선권(후보생 입단, 장학금)

3) 구성절차

- 대상학생 성향분석 / 평가
- 전전학생 선정(남, 여학생)
- 기존 진전조직과 연계구성

4) 활용

- 전전활동전개, 동조 / 지원요원 확산, 상부상조
- * 노출금지, 자발적 활동 유도

나) 가용요소 자기신념화

1) 안보이념교육

- 단장정신교육 및 V.T.R 시청

구분	후보생	위탁장교	군장학생	명예 ROTC 지원후보생	예비군	공직자 자녀	계
시기	월 1회	월 1회	반기 1회 (장학금 지급시)	분기 1회 면접시, 1차 합격 후, 2학기 개강 후	전, 후반 기 교육시	반기 1회	
인원	112	53	20	10	86	4485	120 4886

* 총 학생(12,000여명)의 40.7%

5) 초빙감사 교육

- 시기: 년 2회
- 장소: 학군단 강의실
- 대상: 후보생, 명예 R.O.T.C, 후보생 지원자, 군장학생, 공직자 자녀
- 강사: 선배장교(현역, 예비역), 저명인사 및 교수

6) 후보생 체육대회

- 시기: 년 2년(춘·추계)
- 장소: 대학교 운동장
- 대상: 후보생, 위탁장교, 명예 R.O.T.C, 후보생 지원자, 교수/직원

7) 후보생축제 활성화

- 시기: 년 1회
- 대상: 총장, 처장, 대학장, 교직원, 위탁생, 후보생 파트너, 총학생회
- 주관: R.O.T.C 후보생
- 방법
 - 계획수립 및 통제는 학군단장 책임하에 실시

- 초청인사 안내장은 학군단장, 명예위원장, 명예위원회 명의로 송부
- 장소: 대학내 대강당

8) 예비군조직 활성화

- 시기: 년 2회(예비군의 날, 예비군 교육실시 전)
- 대상: 예비군 지휘자(관)→118명, 학군단 간부
- 주관: 예비군 연대장(대대장)
- 후원: 대학 방위지원 본부
- 방법
 - 체육대회 및 V.T.R 상영
 - 행사실시후 칵테일 및 기념품 증정
 - * 소수 인원대상 임영증 및 전역후 복학시

9) 군장학생, 위탁장교 정기간담회

- 시기: 분기 1회
- 장소: 학군단
- 대상: 군장학생, 공직자 자녀, 위탁장교
- 주관: 학군단장
- 방법
 - 점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단체구성
 - 영화 및 V.T.R 시청, 단장 정신교육
 - 체육대회 및 간담회

10) 안보세미나

- 시기: 년 2회
- 장소: 학군단
- 대상: R.O.T.C 후보생
- 방법: 사전 주제부여 발표 및 토의(발표내용 제출)
- 주관: 교수부장

11) 교직원과 유대강화

- 1) 교직행사 적극 참석
 - 동산부, 야구부, 낚시회, 테니스회 등
 - 학군단 전 간부: 1개이상 행사 참석

12) 길onga 적극 참가

- 학군단 전 간부

13) 여직원행사 참가 및 지원

- 라) 대학과 일체감 조성
- 기) 입학식 및 졸업식 행사 참석
 - 단장, 교수부장

14) R.O.T.C 후보생 입단식 / 입관식 및 축제행사 초청

- 총장, 처장, 각대학장, 교직원

15) 교직원식당 활용

- 학군단 전 간부

16) 각부처와 협력 체육대회 및 간담회

- 시기: 분기 1회
- 주관: 윤번재(학군단↔학생처, 교무처, 총무처)
- 내용: 체육대회(탁구, 배구, 죽구) 및 다과회

17) 신입생 ORIENTATION 참가

- 후보생 선발 및 학군단의 역할 홍보

18) 안보교육 지원활동

1) 전방평균, 전적지 견학

- 시기: 년 2회
- 장소: 땅굴지역 사단 및 통일전망대
- 대상: 가용요소 전인원 및 일반 대학생 회망자
- 차량: 대학과 협조
 - * 계시판 및 신문에 게재

2) 군부대 일일입교

- 시기: 년 1회
- 장소: 학군교 및 여군훈련소
- 대상: 명예 R.O.T.C 후보생, 일반대학생 회망자(여학생)
- 내용: 계시판 및 신문에 게재

3) 대학내 동문고 출신모임 행사참석

- 시기: 출신고 모임시
- 장소: 학군단 전 간부, 위탁장교
- 내용: 식사 및 음료수 제공, 학원안정 활동

4) 건전씨클 활동참가 및 지원

- 대상: 단장, 교수부장
- 써클참가: 2개 써클이상
- 내용: 써클활동에 자연스러운 접촉 및 대화
 - * 예: 독도문제연구회, 연극반, 기독선교반

5) 자연보호 운동

- 시기: 분기 1회(식목일, 육림의 날, 축제후)
- 장소: 교내
- 대상: R.O.T.C, 군장학생, 명예 R.O.T.C
- 방법
 - 교내 환경정리, 오물수거
 - 건전활동 캠페인 전개
 - * 학군단 건물 모델화: 강의실, 복도, 현관, 계시판

6) 1인 1씨를 갖기운동 전개

- 대상: R.O.T.C 후보생, 군장학생, 명예 R.O.T.C
- 내용: -일반대학생과 유대강화
 - 대학내 전 써클에 분산가입
 - 써클내에서 간부직 임무수행
 - * 활동내용 분석회의 실시
 - * 써클 현황

계	전 전	의 식
62	53	9

7) 건전유인물 배포 및 살포

- 시기: 분기 1회
- 장소: 대학캠퍼스내
- 방법: 학군단 자체 건전내용(상황에 따른 대처내용) 작성후 건전학생 명의로 배포 및 살포

8) 육군차원의 안보교육장 활용방안 검토요망

- 흥미위주 체력단련 포함

5. 결론

- 건전조직 구성 및 확산
- 가용요소의 자기신념화
- 안보교육지원 활성화
- 대학과 일체감 조성

교수회의 발언 · 학생집회 내용 기록 안기부 · 보안사에 보고

한성대 대외비 업무일지 학생들이 공개

한성대가 교수와 학생들의 동기를 기록, 안기부, 보안사 및 문교부에 통보해 왔음이 학생들이 학생처 업무일지를 암수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대외비로 분류된 이 일지에는 학생들의 집회내용과 주동학생, 교수회의에서의 발언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정보기관에 알린 시간과 당시자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

지난 4월8일자의 일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있은 학생집회의 주동자와 집회내용을 즉각 문교부, 안기부, 보안사 등에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학생처 직원들이 기관원들과 학내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해 9월8일 오후 6시에는 학생처 직원들이 기관원들이 시내 어떤 장소에서 구속학생문제 등 2학기 학생정책을 협의했다.

이 일지는 지난 5월28일 이 학교 구속청년학생협의회원 15명이 “5공화국 당시에 정치권력과

학인사항		작성자: 김영환 (대외비)	
		작전현(도서부)는 종학생회 5개월 일정을 2학기(영4) 대외비에 결제함.	
		총장과 학생회(이상진 총장)	
총무기관 인원, 인력 사항	기관장	총무부: 김성봉	14:35
	총·주·부처	교수부: 이수운, 신	총·주·부처
	세 목	안기부: 최진관	
		총무부: 이정숙 보안사: 이도신 안기부: 김자원	16:30
	내 용		

<한국대학 88. 6. 15>

의경 학원사찰하다 학생에 불잡혀 인하대 집회장 들어가 정보 수집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시경은 인하대에 의경 4명을 투입,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인천 중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의경 이상철(24) 수경이 인하대에서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다 불잡힘으로써 드러났다. 이 수경은 이

날 학생들에게 “5개월 전부터 인하대에 들어와 학생들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여 본서에 보고해 왔다”고 밝히고 “학내에 들어와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의경은 나 말고도 3명이 더있다”고 말했다.

이 수경은 총학생회 주최로 개최됐던 임시 비상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본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들을 틈에 끼어 비상총회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형수(26·웅용물리학3)씨 등 학생 3명에 의해 불잡혔다.

경찰은 이 수경을 구출하기 위해 인하대 주변에 전경 1천여명을 배치해 놓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경찰 쪽과 협의 끝에 13일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을 맹하고 14일 오후 7시께 이 수경을 풀어 주었다.

고교교사 국립대학에 ‘교육연구사’로 67명 배치

운동권 동태 보고등 학원 사찰

일정기간 근무하면 교감자격증 특혜 총학생회 대응조직 만들도록 학생 부추기기도

[부산=이수운 기자]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연구사’라는 직책으로 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에 모두 67명이 배치돼 학생들의 동태파악 등 사찰업무를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국회 문공위의 부산대 간사자료에 따르면 이를 교육연구사는 서울대에 30명, 부산대 6명, 경북대·전북대·전남대 각 5명 강원대·충북대·충남대 각 4명, 경상대 2명, 부산수산대, 부산공업대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대학의 학생과 학생생활연구소·재외국민교육원·어학부원 등에 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정기간(통상 5년) 동안 대학에서 근무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교감자격증을 받는 등 특혜를 받아 문교부, 시·도교위, 일선학교 등으로 돌아가 근무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종 유인물과 대자보를 수집하는 학생들의 집회·동정 등 동향 파악해 문교부와 정부기관 등 보고하고 대응대책을 세워왔다.

부산대의 경우 86년 7월부터 생처장 직속으로 학교 안에 상설을 만들어 연구사들이 학생 등을 살피도록 했고 동아대

담지도관실에 근무했던 장아무개씨는 지난 79년 3월 이 학교 조교수로 임명돼 지금까지 부산대 사대부고 교사로 별령이 났으나 자리가 없어 옮겨가지 못하고 이 중적을 두고 있다가 문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맡고 있다가 학생들이 반발하자 지난 9월1일자로 이 학교 부설 사대부고 교사로 별령이 났으나 자리가 없어 옮겨가지 못하고 이 중적을 두고 있다가 문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대학 88. 10. 22>

< 1981. 10. 5. 11 >
사복현병 '학원사찰'
 학생들에 조사받고 풀려나

【수원=배경록 기자】 10일 오전 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수도군단 현병대 소속 김인호(23) 병장, 추영두(22) 상병 등 사복군인 3명이 학생들에게 불법히 조사를 받고 1시간40분만에 풀려났다.

이 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관과 도서관 주위를 서성대다가 학생들에게 불법한 김 병장 등은 학생들에게 써준 자인서와 각서에서 "수도군단 현병대 수원파견대장인 신중식 중사로부터 경기대생들의 집회 내용과 시위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교내에 들어왔다"며 "학원사찰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지난 9일의 경기대 교내집회 내용과 시간 대별 학생들의 동향, 구호 등을 기록한 메모지 2장과 현병대 신분증, 특공요원 자격증, 공용 외출·외박증 등을 빼앗고 1시간40분 만인 오전 2시10분께 풀어줬다.

이에 대해 수도군단 현병대 쪽은 "김 병장 등이 탈영병 검거를 위해 외출, 학생들의 시위현장을 보고 호기심때문에 경기대에 들어갔으며, 학생들에게 불법한 뒤 강요에 의해 자인서와 각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사찰 경찰관
학생들이 불잡아**

【부산=이수윤 기자】 5일 밤 10시30분께 부산대 문창회관 앞에서 사찰활동을 벌이던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계 주임 김무진(57) 경위 등 경찰관 4명 가운데 김경위가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청찰서를 쓰고 1시간30분 만에 풀려났다.

김 경위는 학생들에게 불법성을 때 수배증인 (주)통신 노동자 4명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등이 적힌 메모지와 '검거 보고서' 양식 1백여장을 가지고 있었다.

< 1981. 10. 5. >



경찰 컴퓨터 신원조회 나요

엄격제한 불구 2백20업체 4만명 조회 "시위전력자등 기피인물 선별에 이용"

경찰이 일반 기업체로부터 부물을 받고 사용범위가 엄격하게 한돼 있는 범죄경력조회를 일반 직원 채용 때뿐만 아니라 상업·한일·조홍운행 등 시중은행, 삼성생명·현대해상화재보험·럭키화재해상보험·재벌그룹산하보험회사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등 방송사, 국동정유·쌍용정유 등 정유회사에까지 범죄경력 조회를 해주었다. 이밖에 자유총연맹·의보연합회·농협·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신규채용때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체 채용 대상자 신원조회 의뢰 현황'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일선경찰서는 지난 한해간 모두 2백20개 업체로부터 42백53명의 채용대상자에 대한 원조회를 의뢰받아 치안본부에 중보관내 있는 개인별 형사입 날짜·죄명·사법처분결과 등 21 항목에 이르는 컴퓨터 자료 단필 기기를 통해 뽑아 제공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및 이 법 시행령, 보안업무규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경찰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범죄경력자료는 공무원임용·예정자 국영 및 정부관리 기업체의 그리고 군수업체 신규채용부에 한해서만 해당기관 또는 제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할 있으며 납용하면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중역으로 제한

돼 있는 정부투자기관·제투자기관 가운데 거의 모든 기관의 일반 직원 채용 때뿐만 아니라 상업·한일·조홍운행 등 시중은행, 삼성생명·현대해상화재보험·럭키화재해상보험·재벌그룹산하보험회사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등 방송사, 국동정유·쌍용정유 등 정유회사에까지 범죄경력 조회를 해주었다. 이밖에 자유총연맹·의보연합회·농협·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신규채용때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체의 인사관계자는 "80

년대 들어 노조간성이 보편화되

고 노동쟁의가 잦아지면서 대부

분의 재벌기업체를 포함해 상당

수 기업들이 경찰에 부탁, 입사

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신

원조회 결과 시위전력 등이 나타

난 대졸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불합격처리해 왔다"

고 말했다.

< 1981. 10. 2. 24 >



보안사, 세계일보 편집국장 연행

2시간만에 석방 ‘남침용 제4땅굴 발견’ 기사관련

〈세계일보〉 주명갑 편집국장과 김기성 국체부장이 〈세계일보〉 22일자 지방판(5판)에 보도된 ‘남침용 제4땅굴 발견’ 기사와 관련,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22일 새벽 4시와 새벽 1시50분께 각각 집에서 보안사로 강제연행돼 보도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와 오전 6시30분께 풀려났다.

보안사는 또 22일 새벽 대구, 경남·부, 전남, 제주지역의 일부 〈세계일보〉 기사와 보급소에도

각 지역 보안사 분실 소속 수사관을 각각 보내 신문을 압수하거나 배포중지를 요구, 일부 보급소 등에서는 신문을 배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장관 보좌관 현광언준장과 국방부 대변인 김자숙 대령, 보도과장 고정석 대령 등은 21일 밤 11시께 〈세계일보〉 편집국에 찾아와 야간근무중인 편집 담당자들에게 문제의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22일자 지방판 1

면에 4단 크기로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21일자 보도를 인용, 지난해 12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로 보이는

‘제4의 터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가 서울판(15판)에서는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22일자 서울판(15판)에도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제4의 남침땅굴 발견’ 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국방부 김 대변인은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기사와 같은 추측보도가 공개돼서는 안된다”는 방침 아래 신문 회수, 배포 중지 등의 가능한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유우근)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밤 10시15분 비상총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 “외지에 크게 보도된 기사를 문제삼는 태도는 6공정권의 일부세력이 구태의연한 5공식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정권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의 사과 및 관련 책임자 인책 △당국은 군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
20.2.26

“국가기밀 보도 사고 발생땐 해당언론 폐간 마땅”

이상훈 국방, 세계일보 기사관련 발언 ‘파문’

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화를
위하여

- 1) 청년장교 5명, 군명예선언
- 2) 박길남 이병 양심선언(육군 35사단 소속)
-89년 1월7일 군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89년 11월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6년 선고
- 3) 반민중적 폭압기구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

(애국전경 제2호, 89. 1. 21, 전경해체투쟁위원회 발행)

청년장교 5명, 군 명예선언

1989년 1월 5일 육군 제30사단 공병대 소속 이동균 대위, 김종대 중위, 이청록 중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소위 등 청년장교 5명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어 온 정치군인들의 반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군명예선언문'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청년장교들의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명예선언에 대하여 각계의 국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사건을 군이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육군본부는 1월 9일 이들을 군형 법상의 명령위반 및 정치관여 금지조항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후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 사로 떠오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다음 이동균, 김종대 씨에 대하여는 파면하고 나머지 장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이동균, 김종대 씨는 서울 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명예선언의 정당성 여부가 크게 논란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귀관들은 군의 생명인 명령과 기강을 문란케하고..."

명예선언문

반만년 역사흔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뜨거운 조국애로 일관해온바, 민족적인 아픔을 안겨주고 조국 민주화 열망에 누를 범한 불명예를 과감히 청산하고 총체적 사회체계의 상향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군대로 바로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존재로서 깊이 인식하고 국군의 이념, 사명에 따라 행동·지시·명령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 우리는 올바른 사고, 올바른 행동으로 명예를 실현한다.

셋, 우리는 군을 불명예로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넷, 우리는 정치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외에 군의 엄정한 정치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

다섯,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 밖의 개인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상적인 지휘계통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 우리는 인내와 반성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일곱, 우리는 그동안 사회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집단적 이기주의를 배격하여 밝고 공정한 사회 창달에 기여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생존권 보장과 민족흔의 계승을 위한 민족적 양심을 보장하는 것에 진정한 명예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천명합니다.

89. 1. 5

대위 이동균

중위 김종대

중위 이청록

소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반민중적 폭압기구 보안사, 안기부 치본 대공분실,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양심선언문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국토를 방위하며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할 군대가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 지배질서의 수단으로 되어 같은 민족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양기의 용병, 파쇼의 군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일 수 없는 대한의 국군은 비민주적·반민족 요소가 국에 달해있는 반동의 군대 처해져 어버린 어찌구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개인의 털영 병으로서가 아닌 전민중의 엄원인 민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 소총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대한의 군대가 하루속히 민족자주군대로의 질적인 전화를 해나가야 함을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미망히 철 페·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저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제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장병(특히 신병)들의 탈영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이 부분은 군대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해나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국 강도를 지키고자 젊음을 바치겠다는 건전한 사고로써 군복무에 충실히 임하는데 이르고 자살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민주군대임을 자처하는 현대한 민국 국군은 여기에 대해 군기강문론, 명령률복종등의 모아온 아기사기(아기사기)를

도 안되는 논리로 맞아죽는 사례가 하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탈영을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합리한 자대배치와 인사문제에 대하여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대한의 군은 가실은 가장 불합리화하고 불평등한 모순구조로 되어있으며 이에 온갖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단적인 예로, 신병교육대가 훈련소에서 자대로의 배치과정을 보면 돈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편안한 군생활을 보장받고 아무내세을 것 없는 민중의 아들들은 운이 따르면 조금 편한 곳으로 배정받기도 하나 절대 다수 가 열악한 해안이나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데, 관계, 재력, 아니면 학벌로써 평등을 보장받는 것은 험리한 비정상적 형태로써 존재하는 것은 현대한 군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군의 반민중적·비민주적 요소를 폭로한다

리 교육, 분단교육은 미망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역병과 방역병들간의 문제, 하사관들간의 문제들은 심각한 상황이며, 병들과 상관들간의 불신의 벽은 나날이 두터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째로, 광주 학살과 군대내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하여

민족의 비극 광주 학살과 억울하게 죽어, 아니면 학벌로써 평등을 보장받는 것의 부모를 풍길로 희살하고 형제를 의문으로 물어넣은 이 오욕의 역사를 반드시 규명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도 밤잠을 설치이며, 철책을 지키며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 대로 이땅의 민주화와 자주로 이어지는 기여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미제 군국주의자들과 군사과술정권의 두개의 한국 정체으로 영구분단의 오욕의 역사의 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이 상이들 한줌도 안되는 두 무리를 과도한 자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풍고 하는데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여하는 대만, 그것도 우리의 민족인 새, 민족과 동일을 위해 기여하는 대

이고 부당한 명령은 절단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군부독재의 용병으로서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민족자주군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분단의 긴 어둠 속에서 재편도 못하고 가버린 수많은 애국의 박해를 위해서 우리 군은 미국놈과 군부독재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쟁취해야 할 대상은 동족의 가슴이 아니라 미국놈과 군부독재일당입니다. 이제 저는 이땅에서 더이상 군문화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없는 그날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해방의 조국 그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애국 장병 여러분!

당부합니다. 신병들이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이제는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일 수 없으며, 그때의 일체의 군사교육의 일환인 구타와 가혹 행위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족자주군 대로의 그 위대한 첫걸음은 이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은 미국놈의 용병이 아니라는 것을 독재 정권의 지배 수단으로써 존립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오직 육천만 민중의 엄원인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국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민중의 군대임을 애국 장병 여러분께 고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는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가의 주권을 지켜 나가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행위와 민주민권을 안정적으로 보위하는 민중주권의 물리적 토대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군대는 국가주권의 자주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제 1의 척도이며 또한 경찰은 그 나라의 국가권력이 민중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중의 권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총뿌리를 같은 민족에게, 또한 부모형제들에게 둘이 대고 있는 군대는 민족의 군대일 수 없으며, 노동자·농민·애국시민들의 불의와 독재에 대한 민주적 항거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폭력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분단의 현실 속에서 44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조국 분단 이후 이땅에는 수많은 반민중적 폭압기구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군통수권과 작전지휘권을 미국놈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군대는 5·16 군사쿠데타와 12·12 반란, 그리고 2,000여명의 광주 민중을 참혹하게 학살하였으며 군의 핵심 권력기반인 보안사는 군부통치의 폭압적인 통치를 뒷받침하면서 녹화사업, 삼청교육대등의 살인적 만행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상조차 알 수 없는 군내의 수많은 의문사(살인)와 군특수

이에 민족자주군대의 쟁취 및 민족민

주경찰상의 구현을 강력히 제기하고 투쟁해왔던 우리는 반민중적 폭압기구 보안사, 안기부, 치본 대공분실, 전투경찰, 백골단 등의 해체를 위해 모든 애국민주 세력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경의 국민적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화 등 당면한 군경 민주화 투쟁의 선결조건으로서의 반민중적 폭압기구 해체투쟁은 애국군인, 애국전경 그리고 양심적인 경찰관들의 자각과 결의를 불러 일으키는 싸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폭압기구 해체투쟁과 더불어 광주학살, 녹화사업, 삼청교육대 등의 학살 책임자들, 반인륜적인 고문행위자들의 구속 처벌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군인, 경찰들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전선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잇따른 애국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 군부독재 타도하여 군·경의 중립화 정착하라!
- 반민중적 폭압기구 보안사, 안기부, 치본 대공분실, 전투경찰, 백골단 해체하라!
- 명예선언 애국군인 즉각 석방하라!
- 전·노일당 사병조직 전투경찰 해체하라 !!

통일염원 45년 1월 21일



